



제 안 설 명

- 2030 고령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
- 고령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 령 군
(도 시 과)

도시과장 이해봉입니다.

존경하는 이철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도시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감사를 드리면서,

『2030 고령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
『고령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2030 고령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군관리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라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군은 2018년 7월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고시 이후 재정비 수립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 2030 고령 군기본계획 승인에 따른 장기발전방향, 계획지표 등을 반영하여 대·내외 여건변화 및 주민요구사항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고령군의 특성에 부합하는 건전한 도시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군관리계획 재정비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 이에 ‘2030 고령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에 따라 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 계획의 주요내용입니다.

●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은 고령군 행정구역 전역을 대상으로 하며, 2020년을 기준으로 목표연도는 2030년으로 설정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용도지역·지구의 결정(변경),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 및 지구단위계획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 금회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중 의회의견청취 대상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7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지역·지구의 결정(변경) 사항 및 군계획 시설 중 주간선도로, 공원, 대학,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폐기물 처리시설이 되겠습니다.

▶ 추진경위 및 향후일정입니다.

- 2022년 6월에 착수하여 토지적성평가 완료 후 계획(안)을 확정하였으며, 금일 의회의견청취 후 9월 초 주민의견청취를 시작으로 군관련부서(기관) 협의, 군계획위원회 및 공동위원회의 자문·심의를 거쳐 경상북도에 결정신청을 하고, 경상북도 관련부서(기관)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6월 최종 결정 고시를 하고자 합니다.

▶ 세부계획은 붙임자료를 통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 먼저,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항입니다.
 - 대가야읍 도시지역은 공동주택용지 소진에 따라 제1종일반주거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의 변경 약 14만㎡와 도시개발사업 추진 여건마련을 도모하고자 생산녹지지역 약 20만㎡를 도시개발사업구역 지정이 가능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며, 기타 현황여건 반영 및 도로 경계로의 용도지역 변경 등을 계획하였습니다.

- 비도시지역의 용도지역 계획은 금회 농업진흥지역과 보전산지에서 해제된 지역에 대하여 주변 용도지역 현황 및 토지적성 평가 결과를 검토 후 계획관리지역 약 95만㎡, 생산관리지역 약 0.8만㎡, 보전관리지역 약 60만㎡를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관리지역 세분 이전 적법하게 개발이 완료된 적법훼손지를 계획관리지역으로 약 0.8만㎡ 변경을 계획하였으며, 관리지역 세분 당시 1만㎡ 기준에 미달한 주거밀집지역 3개소 및 여건변화에 따른 불합리한 용도지역 조정 등을 계획하였습니다.

● 용도지구 결정(변경) 사항입니다.

- 대가야읍 도시지역 내 고도지구(H=45m) 1개소가 기지정되어 있으나, 문화재현상변경 허용기준(H=32m)과 이중규제됨으로 고도지구 1개소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 군계획시설 결정(변경) 사항입니다.

- 군계획시설 중 의회의견청취 대상은 주간선도로 17개소 및 공원 4개소, 공공청사 5개소, 기운영 중인 폐기물처리시설 1개소의 신설·변경을 계획하였습니다.

○ 다음은 『고령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등 법령체계의 정합성을 제고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난개발 방지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 이에 대한 주요 내용으로는,

- 군관리계획안 주민의견 청취 시 ‘토지이음’에 등록하는 방법이 추가되는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안 제7조, 제8조 개정)
-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유휴토지 또는 대규모 시설의 이전부지 면적 기준을 5천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안 제15조제1항 신설)
-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연장기간 포함 총 3년으로 규정하고, 공익 목적 또는 건본주택과 같은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존치기간 연장 횟수에 대해 별도로 예외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6조의2 신설)
- 5,000제곱미터 이상의 대규모 형질 변경이 수반되는 제조업소 등의 시설에 대해 경관 및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난개발 방지 및 전문적인 입지 분석을 위해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개정하고자 하며, (안 제17조의2 개정)
- 발전시설 용량 100킬로와트 이하인 소규모 발전시설에 대해서도 발전시설 설치 입지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경관 및 정주환경을 보호할 수 있도록 소규모 발전시설 입지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안 제20조의5제3항 삭제)
-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 건축물에 대해 15층 이하 층수제한 규정을 폐지하여 주택공급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며, (안 별표 4 개정)

- 계획관리지역 내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숙박시설의 경우 「하천법」에 따른 국가하천·지방하천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에서는 설치할 수 없는 규정에 대해 지방하천의 경우 구(舊)지방1급 하천에 한해 적용되도록 개정하여 낙후지역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안 별표 24 신설)
- 그 밖에도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용도지역·지구에 대한 건축제한 및 건폐율·용적률 완화 기준을 정비하고, 일부 형식상 미비한 사항에 대해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2030 고령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건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적극 반영토록 하겠으며,

『고령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8월 일

도시과장 이 해 봉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4. . . (제 회)	

2030 고령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

제출자	고령군수 (도시과장)
제출연월일	2024. . .

2030 고령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

의안 번호	
----------	--

제안일자 : 2024. . .
제안자 : 고령군수

1. 제안사유

군관리계획(재정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5년마다 재검토하는 법정계획으로서, 우리군은 2030 고령 군기본계획 승인에 따른 장기발전방향, 계획지표 등을 반영하여 대·내외 여건변화 및 주민요구 사항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고령군의 특성에 부합하는 건전한 도시발전을 유도하기 위하여 군관리계획 재정비를 추진중에 있으며, ‘2030 고령 군관리 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2. 근거 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3. 주요 내용

- 위 치 : 고령군 행정구역 전역(1읍 7면, 384.048km²)
- 시간적 범위
 - 기준년도 2020년 / 목표연도 2030년
 - 목표연도 계획인구 : 36,500인(2030 고령 군기본계획)
 - ※ 2024년 7월 인구 : 30,231인

○ 계획의 내용

- 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에 관한 계획
-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 의회의견청취 대상

-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의 입안을 위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7항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 함

구 분	의견청취 대상	금회 의견청취 대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7항	1.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 2. 도로 중 주간선도로 3. 철도 중 도시철도 4. 자동차정류장 중 여객자동차터미널 5. 공원(소공원 및 어린이공원 제외) 6. 유통업무설비 7. 학교 중 대학 8. 공공청사 중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9. 하수도(하수종말처리시설) 10. 폐기물처리시설 및 재활용시설 11. 수질오염방지시설 12.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시설 (운동장, 장사시설)	1.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 2. 도로 중 주간선도로 5. 공원(소공원 및 어린이공원 제외) 7. 학교 중 대학 8. 공공청사 중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10. 폐기물처리시설 및 재활용시설

※ 경미한 사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변경)하는 사항은 제외

4. 사업추진 현황

- 2022.06. : 군관리계획(재정비) 용역 착수
- 2022.11.28. : 도시지역 장기미집행시설 실효
- 2022.12.29. : 비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장기미집행시설 실효
- 2023.01. ~ 11. : 고령 군관리계획(재정비)(안) 검토
- 2024.03.14. : 비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 정비 고시(지산지구 외 6개지구)
- 2023.11. : 토지적성평가 평가완료(별도진행)
- 2023.11. ~ 2024.01. : 토지적성평가 완료에 따른 재정비(안) 확정
- 2024.05.17. : 입안여부 심의(토지적성평가 “나·다” 등급 입안여부 심의)
- 2024.06. ~ 08. :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 진행 중
- 2024.08.09. : 의회의견청취 사전설명

5. 향후 추진 계획

- 2024.09. : 주민의견청취(열람·공고)
- 2024.09. : 군 관련부서(기관) 협의
- 2024.10. : 군계획위원회 자문 및 심의(공동위원회 심의)
- 2024.11. : 경상북도 사전협의
- 2024.12. :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신청(고령군 → 경상북도)
- 2025.01. : 경상북도 관련부서(기관) 협의
- 2025.05. :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2025.06. :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6. 고령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조서 : 붙임

고령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① 군관리계획(재정비) 정비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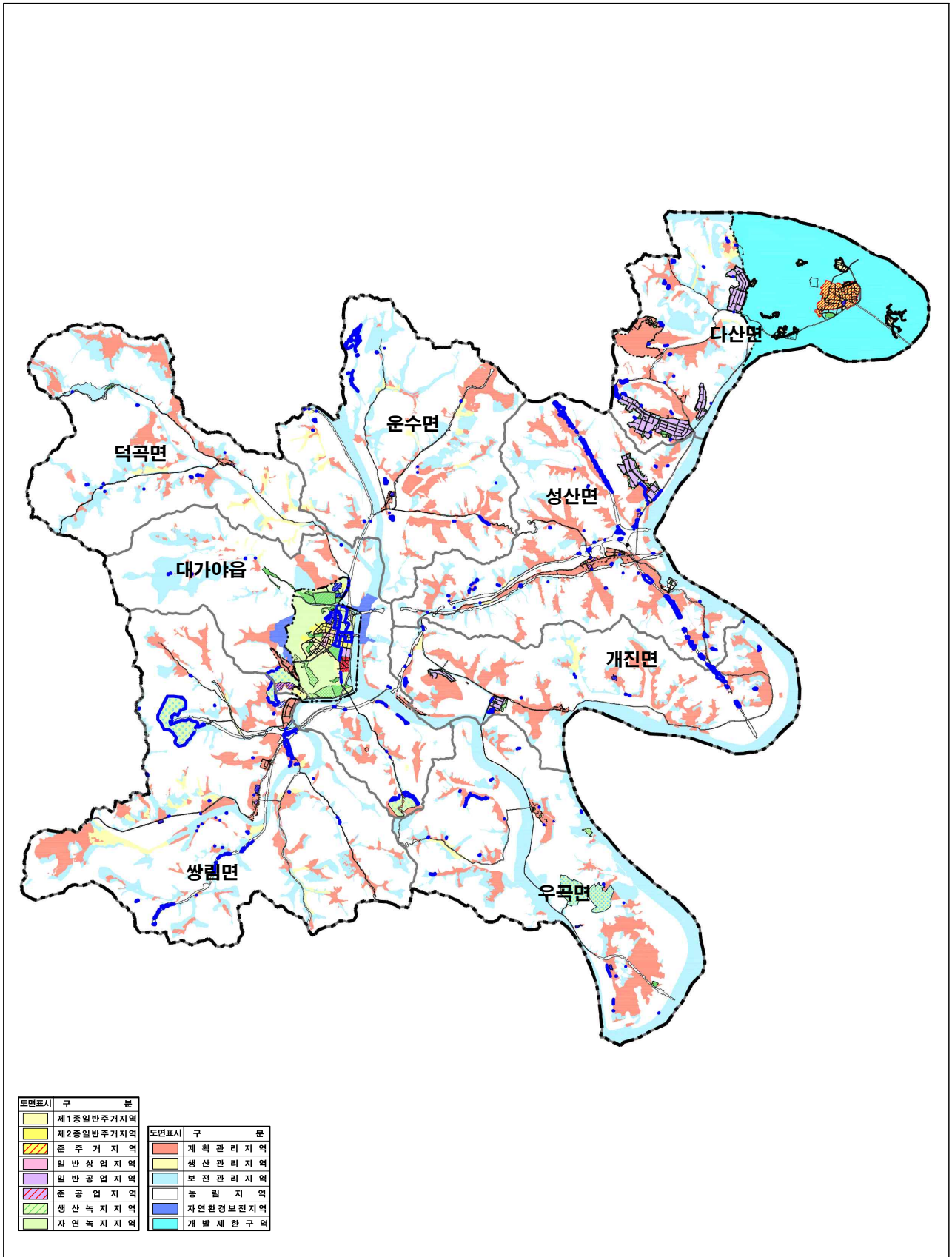
구분	정비유형	정비내용	변경사항	
용도 지역	도시 지역 (6개소)	① 도시기능 강화를 위한 개발용지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시개발사업추진 여건마련 •공동주택(APT) 용지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산녹지→자연녹지 •제1종일반주거→제2종일반주거
		② 여건변화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로선형 변경에 따른 용도 지역 현실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종일반주거→자연녹지 •일반·준공업지역→생산녹지
	비도시 지역 (198개소)	③ 여건변화 및 불합리한 용도지역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거밀집지역 •적법훼손지 등 •도로선형 변경에 따라 도시지역 축소 •쌍림 고령IC 일원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산·보전관리, 농림지역 →계획관리 •계획관리→보전관리·농림지역 •제1종일반주거→농림지역 •자연녹지→보전관리·농림지역
		④ 관리지역세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해제지역의 관리지역 세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림지역→생산, 보전, 계획관리
		⑤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원사항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전관리→계획관리지역
용도 지구	도시 지역 (1개소)	⑥ 이중규제 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가야읍 고도지구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으로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도지구(H=45m) 폐지
		비도시 지역 (2개소)	⑦ 도로변경에 따른 현실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로선형 조정에 따른 주거개발진흥지구 축소
	⑧ 여건변화에 따른 계획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선석산개발 지구단위계획구역 폐지에 따른 개발진흥지구 폐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업개발진흥지구 폐지 (개선석산개발지구)
군계획시설 (27개소)	⑨ 개설현황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설현황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로, 대학교 등 	
	⑩ 체계적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기미집행 유예 공원 경계 조정 •체계적 관리 등을 위한 정비 •민원사항 반영 		

②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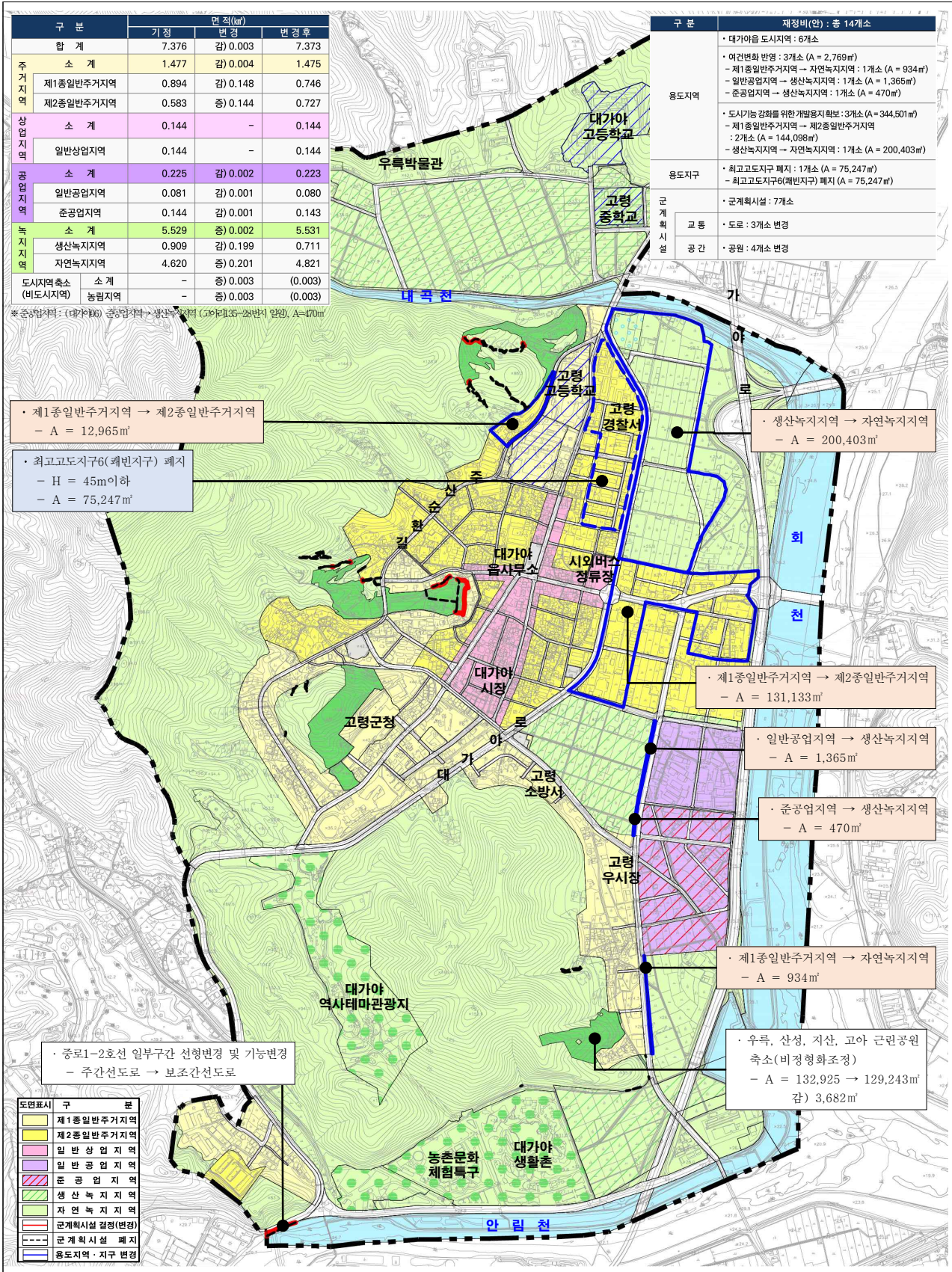
○ 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총괄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384,048,324	-	384,048,324	100.00			
소계	32,475,511	감) 2,808	32,472,703	8.46	도시지역 축소		
도시지역	계	2,935,710	감) 3,580	2,932,130	0.76		
	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1,307,598	감) 147,678	1,159,920	0.30	도시지역 축소
		제2종일반주거지역	583,456	증) 144,098	727,554	0.19	
		제3종일반주거지역	-	-	-	-	
		준주거지역	1,044,656	-	1,044,656	0.27	
	계	143,886	-	143,886	0.04		
	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	-	-	-	-	
		일반상업지역	143,886	-	143,886	0.04	
		근린상업지역	-	-	-	-	
		유통상업지역	-	-	-	-	
	계	3,481,713	감) 1,835	3,479,878	0.91		
	공업지역	전용공업지역	-	-	-	-	
		일반공업지역	3,319,439	감) 1,365	3,318,074	0.86	도로경계조정
		준공업지역	162,274	감) 470	161,804	0.05	도로경계조정
	계	25,801,543	증) 2,607	25,804,150	6.72		
	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	-	-	-	-	
생산녹지지역		909,821	감) 198,568	711,253	0.19	도시개발사업 여건마련	
자연녹지지역		24,891,722	증) 201,175	25,092,897	6.53	도시지역 축소	
미지정	112,659	-	112,659	0.03			
소계	351,572,813	증) 2,808	351,575,621	91.54			
비도시지역	계	117,607,987	증) 742,289	118,350,276	30.82		
	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63,420,812	증) 483,696	63,904,506	16.64	
		생산관리지역	4,418,398	감) 4,709	4,423,107	1.15	
		계획관리지역	49,768,777	증) 253,884	50,022,661	13.03	
	농림지역	232,748,826	감) 739,481	232,009,345	60.41		
	자연환경보전지역	1,216,000	-	1,216,000	0.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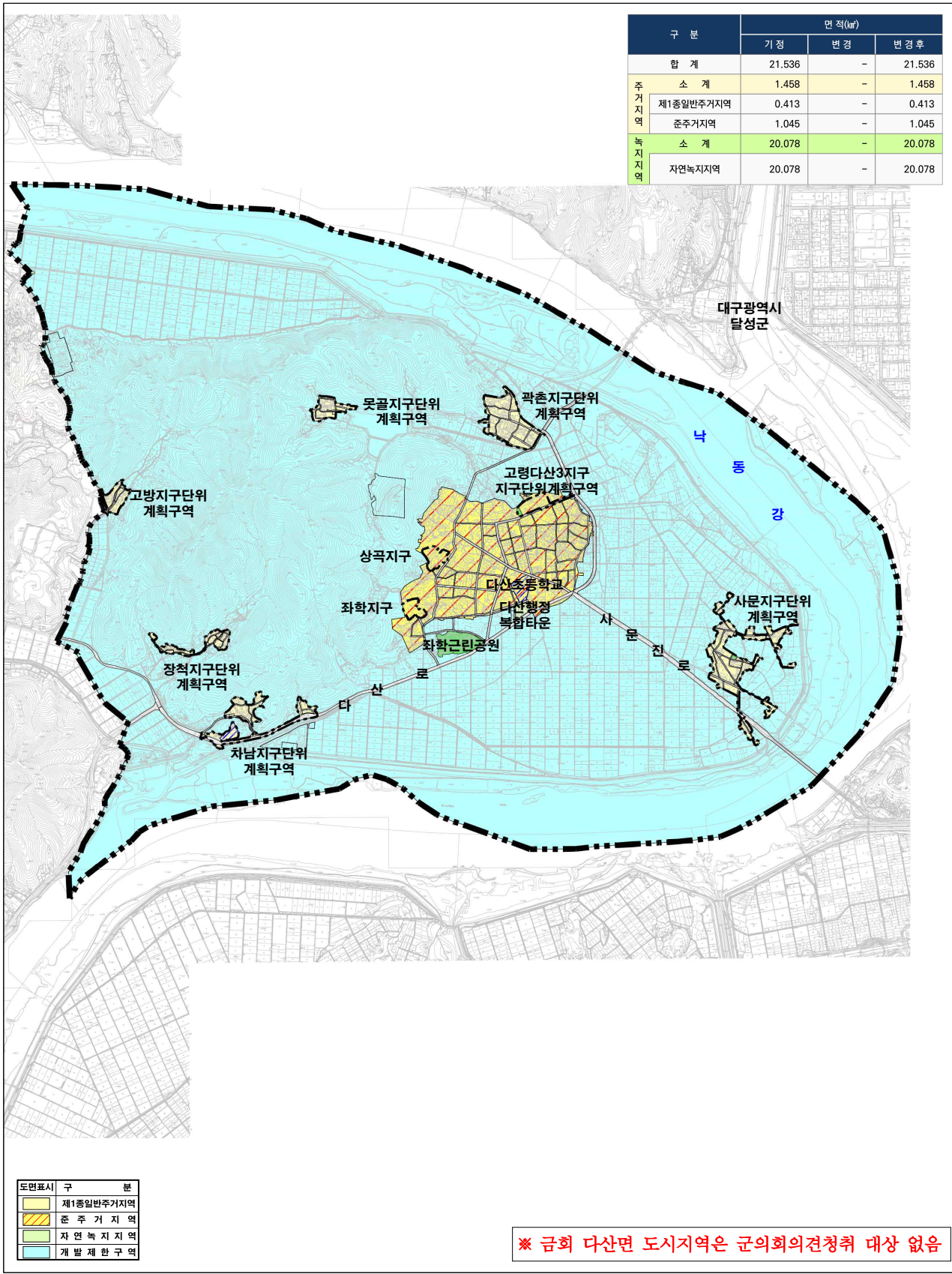
[용도지역 총괄도]



○ 대가야읍 도시지역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 다산면 도시지역 군관리계획 현황도(금회 용도지역 변경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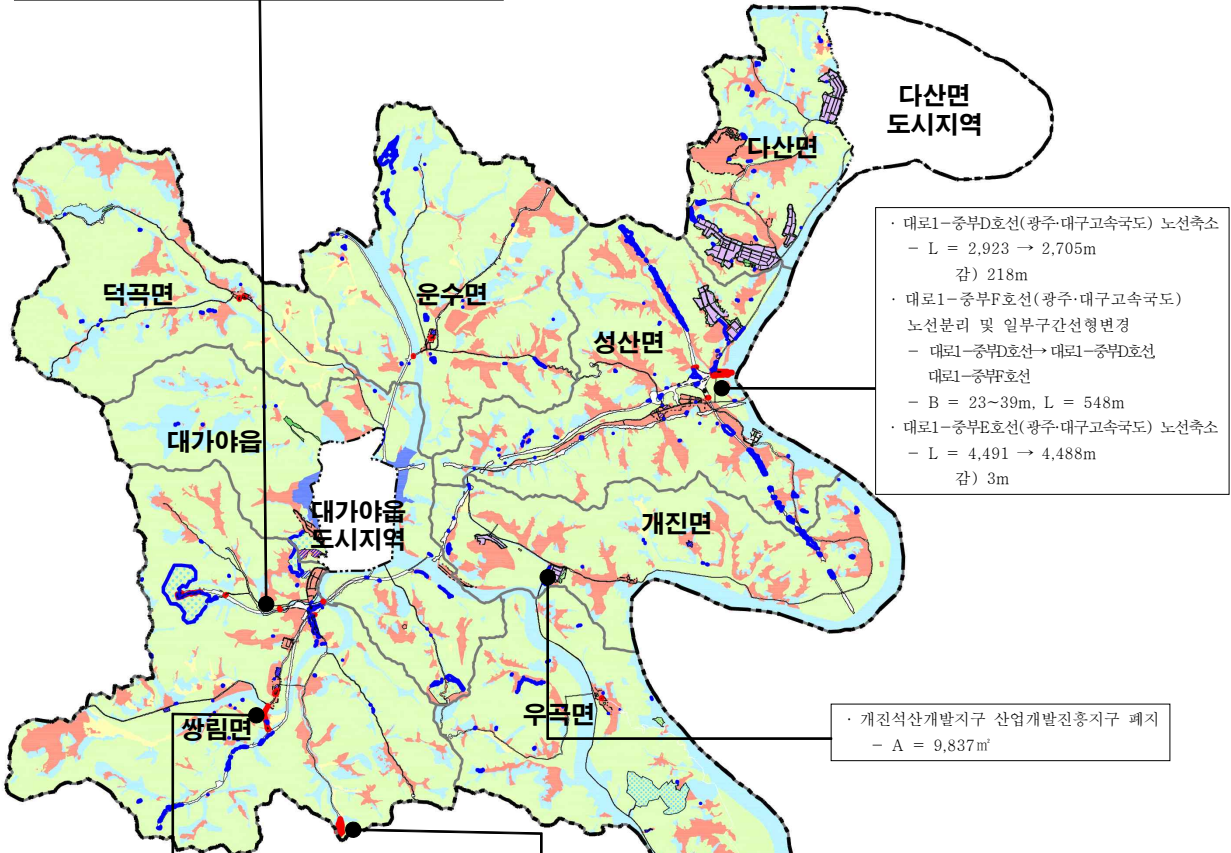
도면표시 구 분
 제1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 금회 다산면 도시지역은 군의회의결정취 대상 없음

○ 비도시지역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 대로2-新88D호선(광주·대구고속국도)노선축소
 - L = 7,647 → 3,415m
 - 감) 4,232m
- 대로2-新88F호선(광주·대구고속국도)노선분리 및 일부구간선형변경
 - 대로2-新88D호선 → 대로2-新88D호선, 대로2-新88F호선
 - B = 23~31m, L = 2,999m

구분	면적(㎡)		
	기정	변경	변경 후
비도시지역	351,572	증) 0.003	351,575
소 계	117,608	증) 0.742	118,350
관리지역	49,769	증) 0.254	50,023
계획관리지역	4,418	증) 0.005	4,423
생산관리지역	63,421	증) 0.483	63,904
보전관리지역	232,748	감) 0.739	232,009
농림지역	1,216	-	1,216
자연환경보전지역			



- 대로1-중부D호선(광주·대구고속국도) 노선축소
 - L = 2,923 → 2,705m
 - 감) 218m
- 대로1-중부F호선(광주·대구고속국도) 노선분리 및 일부구간선형변경
 - 대로1-중부D호선 → 대로1-중부D호선
 - 대로1-중부F호선
 - B = 23~39m, L = 548m
- 대로1-중부E호선(광주·대구고속국도) 노선축소
 - L = 4,491 → 4,488m
 - 감) 3m

· 개진석산개발지구 산업개발진흥지구 폐지
- A = 9,837㎡

- 중로1-국33A호선(국도33호선) 일부구간 선형변경 및 기능변경
 - 보조간선도로 → 주간선도로
- 중로3-12호선(국도26호선)
 - B = 8~12m, L = 752m

· 폐기물처리시설2(환경위생사업소) 신설
- A = 38,296㎡

구분	재정비(안) : 총 220개소
비도시지역	198개소
용도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합리한 용도지역 조정(주거밀집지역 및 도시지역 축소 등) : 25개소 (A = 141,304㎡) - 제1용역반우거지역 → 농림지역 : 1개소 (A = 2,646㎡) - 자연녹지지역 → 용역지역 : 1개소 (A = 119㎡) - 자연녹지지역 → 보전관리지역 : 1개소 (A = 43㎡) - 계획관리지역 → 농림지역 : 1개소 (A = 1,668㎡) - 계획관리지역 → 농림지역 : 3개소 (A = 5,992㎡) - 보전관리지역 → 계획관리지역 : 11개소 (A = 88,518㎡) - 농림지역 → 계획관리지역 : 7개소 (A = 42,318㎡)
용도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합리한 용도지역 조정(적법해소지) : 16개소 (A = 8,431㎡) - 생산관리지역 → 계획관리지역 : 7개소 (A = 3,001㎡) - 보전관리지역 → 계획관리지역 : 9개소 (A = 5,430㎡)
군계획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리지역 세분 : 150개소 (A = 705,920㎡) - 농림지역 → 계획관리지역 : 63개소 (A = 95,373㎡) - 농림지역 → 생산관리지역 : 9개소 (A = 7,710㎡) - 농림지역 → 보전관리지역 : 78개소 (A = 602,837㎡) · 민원사항 반영 : 7개소 (A = 26,904㎡) - 보전관리지역 → 계획관리지역 : 7개소 (A = 26,904㎡)
군계획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발진흥지구-지구단위계획구역 축소 및 폐지 : 2개소 - 아곡·독성지구 축소 (A = 271,194 → 207,814㎡, 감 380㎡) - 개진석산개발지구 폐지 (A = 9,837㎡)
군계획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계획시설 : 20개소 교통 : 도로 : 14개소 (광주·대구고속국도 : 5개소 변경, 국도 : 1개소 신설, 8개소 변경) 공공·문화체육 : 공공청사 : 5개소 변경 환경기초 : 폐기물처리시설 : 1개소 신설 (쌍림면 신곡리, 환경위생사업소)

도면표시	구분
[Red Box]	계획관리지역
[Yellow Box]	생산관리지역
[Blue Box]	보전관리지역
[Green Box]	농림지역
[Light Blue Box]	자연환경보전지역
[Dashed Line]	군계획시설 결정(변경)
[Dotted Line]	군계획시설 폐지
[Thick Blue Line]	용도지역·지구 변경

[붙임]

고령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조서

목 차

① 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조서	18
② 용도지구 결정(변경)(안) 조서	39
가. 고도지구	39
나. 개발진흥지구	39
③ 군계획시설 결정(변경)(안) 조서	40
가. 교통시설	40
나. 공간시설	43
다. 공공·문화체육시설	44
라. 환경기초시설	45

1 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조서

< 총괄 >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384,048,324	-	384,048,324	100.00		
도 시 지 역	소 계	32,475,511	감) 2,808	32,472,703	8.46		
	주거 지역	소 계	2,935,710	감) 3,580	2,932,130	0.76	
		제1종일반주거지역	1,307,598	감) 147,678	1,159,920	0.30	
		제2종일반주거지역	583,456	증) 144,098	727,554	0.19	
		준주거지역	1,044,656	-	1,044,656	0.27	
	상업 지역	소 계	143,886	-	143,886	0.04	
		일반상업지역	143,886	-	143,886	0.04	
	공업 지역	소 계	3,481,713	감) 1,835	3,479,878	0.91	
		일반공업지역	3,319,439	감) 1,365	3,318,074	0.86	
		준공업지역	162,274	감) 470	161,804	0.05	
	녹지 지역	소 계	25,801,543	증) 2,607	25,804,150	6.72	
		생산녹지지역	909,821	감) 198,568	711,253	0.19	
		자연녹지지역	24,891,722	증) 201,175	25,092,897	6.53	
	미지정		112,659	-	112,659	0.03	
	관 리 지 역	소 계	117,607,987	증) 742,289	118,350,276	30.82	
		계획관리지역	49,768,777	증) 253,884	50,022,661	13.03	
생산관리지역		4,418,398	증) 4,709	4,423,107	1.15		
보전관리지역		63,420,812	증) 483,696	63,904,508	16.64		
농림지역		232,748,826	감) 739,481	232,009,345	60.41		
자연환경보전지역		1,216,000	-	1,216,000	0.31		

< 대가야읍 도시지역 >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도시지역	합 계	7,375,900	감) 2,808	7,373,092	100.0		
	소 계	1,477,557	감) 3,580	1,473,977	20.0		
	주거 지역	제1종전용주거지역	-	-	-	-	
		제2종전용주거지역	-	-	-	-	
		제1종일반주거지역	894,101	감) 147,678	746,423	10.1	
		제2종일반주거지역	583,456	증) 144,098	727,554	9.9	
		제3종일반주거지역	-	-	-	-	
		준주거지역	-	-	-	-	
		소 계	143,886	-	143,886	2.0	
	상업 지역	중심상업지역	-	-	-	-	
		일반상업지역	143,886	-	143,886	2.0	
		근린상업지역	-	-	-	-	
		유통상업지역	-	-	-	-	
		소 계	225,124	감) 1,835	223,289	3.0	
	공업 지역	전용공업지역	-	-	-	-	
		일반공업지역	81,184	감) 1,365	79,819	1.1	
		준공업지역	143,940	감) 470	143,470	1.9	
		소 계	5,529,333	증) 2,607	5,531,940	75.0	
	녹지 지역	보전녹지지역	-	-	-	-	
		생산녹지지역	909,821	감) 198,568	711,253	9.7	
		자연녹지지역	4,619,512	증) 201,175	4,820,687	65.3	
소 계		-	증) (2,808)	(2,808)	-		
도시지역 축소 (비도시지역)	소 계	-	증) (2,808)	(2,808)	-		
	농림지역	-	증) (2,808)	(2,808)	-		

※ 비도시지역으로 편입되는 도시지역 면적은 기정 및 변경 면적 합계에 포함하지 않음

□ 용도지역별 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 적 (㎡)	용적율 (%)	결정(변경) 사유
		기 정	변 경			
대가야읍1	대가야읍 연조리 92-1번지 일원	제1종일반 주거지역	제2종일반 주거지역	12,965	250	군계획시설(도로, 학교)로 위요된 지역 으로서 연접지역과의 토지이용계획의 일관성 및 개발수요 증가 등 연접 용도지역과 일관성을 고려한 용도지역 종상향
대가야읍2	대가야읍 캐빈리 353-8번지 일원	생산 녹지지역	자연 녹지지역	200,403	100	대가야읍 시가지의 개발가능지 부족 및 도시의 확장한계에 따른 개발사업 등의 여건 마련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
대가야읍3	대가야읍 헌문리 200-1번지 일원	제1종일반 주거지역	제2종일반 주거지역	131,133	250	대가야읍의 관문지역으로 개발수요 증가에 따른 개발여건 확보 및 주변 용도지역과의 일관성을 통한 토지이용 계획의 효율성 제고를 고려한 용도 지역 종상향
대가야읍4	대가야읍 장기리 272-16번지 일원	일반 공업지역	생산 녹지지역	1,365	100	
대가야읍5	대가야읍 고아리 135-28번지 일원	준공업지역	생산 녹지지역	470	100	중로1-3호선 실효(경고 제2020-778호)에 따른 관련지침에 부합하도록 도로 경계에 맞게 용도지역 조정 - 주·상·공업지역 경계의 일반도로인 경우에는 녹지지역이 아닌 지역으로 설정
대가야읍6	대가야읍 고아리 448-3번지 일원	제1종일반 주거지역	자연 녹지지역	934	100	

< 다산면 도시지역 >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도시지역	합 계	21,536,000	-	21,536,000	100.0		
	주거 지역	소 계	1,458,153	-	1,458,153	6.8	
		제1종전용주거지역	-	-	-	-	
		제2종전용주거지역	-	-	-	-	
		제1종일반주거지역	413,497	-	413,497	1.9	
		제2종일반주거지역	-	-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	-	-	
		준주거지역	1,044,656	-	1,044,656	4.9	
		소 계	-	-	-	-	
	상업 지역	중심상업지역	-	-	-	-	
		일반상업지역	-	-	-	-	
		근린상업지역	-	-	-	-	
		유통상업지역	-	-	-	-	
		소 계	-	-	-	-	
	공업 지역	전용공업지역	-	-	-	-	
		일반공업지역	-	-	-	-	
		준공업지역	-	-	-	-	
		소 계	20,077,847	-	20,077,847	93.2	
	녹지 지역	보전녹지지역	-	-	-	-	
		생산녹지지역	-	-	-	-	
자연녹지지역		20,077,847	-	20,077,847	93.2		

< 기타 도시지역 - 산업단지 >

■ 총괄 (변경없음)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3,563,611.2	-	3,563,611.2	1000.0	
공업 지역	소 계	3,256,589.2	-	3,256,589.2	91.4	
	전용공업지역	-	-	-	-	
	일반공업지역	3,238,255.2	-	3,238,255.2	90.9	
	준공업지역	18,334.0	-	18,334.0	0.5	
녹지 지역	소 계	194,363.0	-	194,363.0	5.4	
	보전녹지지역	-	-	-	-	
	생산녹지지역	-	-	-	-	
	자연녹지지역	194,363.0	-	194,363.0	5.4	
미지정		112,659.0	-	112,659.0	3.2	

■ 개진 일반산업단지 (변경없음)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148,341.0	-	148,341.0	100.0	
공업 지역	소 계	-	-	-	-	
	전용공업지역	-	-	-	-	
	일반공업지역	148,341.0	-	148,341.0	100.0	
	준공업지역	-	-	-	-	
미지정		-	-	-	-	

■ 성산 일반산업단지 (변경없음)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112,659.0	-	112,659.0	100.0	
공업 지역	소 계	-	-	-	-	
	전용공업지역	-	-	-	-	
	일반공업지역	-	-	-	-	
	준공업지역	-	-	-	-	
미지정		112,659.0	-	112,659.0	100.0	

■ 고령1 일반산업단지 (변경없음)

구 분		면 적(m ²)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636,832.4	-	636,832.4	100.0	
공업 지역	소 계	636,832.4	-	636,832.4	100.0	
	전용공업지역	-	-	-	-	
	일반공업지역	636,832.4	-	636,832.4	100.0	
	준공업지역	-	-	-	-	

■ 고령2 일반산업단지 (변경없음)

구 분		면 적(m ²)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766,235.5	-	766,235.5	100.0	
공업 지역	소 계	766,235.5	-	766,235.5	100.0	
	전용공업지역	-	-	-	-	
	일반공업지역	766,235.5	-	766,235.5	100.0	
	준공업지역	-	-	-	-	

■ 동고령 일반산업단지 (변경없음)

구 분		면 적(m ²)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총 계		748,534.0	-	748,534.0	100.0	
공업 지역	소 계	554,171.0	-	554,171.0	74.9	
	전용공업지역	-	-	-	-	
	일반공업지역	535,837.0	-	535,837.0	72.4	
	준공업지역	18,334.0	-	18,334.0	2.5	
농지 지역	소 계	194,363.0	-	194,363.0	25.1	
	보전농지지역	-	-	-	-	
	생산농지지역	-	-	-	-	
	자연농지지역	194,363.0	-	194,363.0	25.1	

■ 열피 일반산업단지 (변경없음)

구 분		면 적(m ²)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총 계		220,688.0	-	220,688.0	100.0	
공업 지역	소 계	220,688.0	-	220,688.0	100.0	
	전용공업지역	-	-	-	-	
	일반공업지역	220,688.0	-	220,688.0	100.0	
	준공업지역	-	-	-	-	

■ 월성 일반산업단지 (변경없음)

구 분		면 적(m ²)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총 계		667,971.0	-	667,971.0	100.0	
공업 지역	소 계	667,971.0	-	667,971.0	100.0	
	전용공업지역	-	-	-	-	
	일반공업지역	6,679,71.0	-	6,679,71.0	100.0	
	준공업지역	-	-	-	-	

■ 송곡 일반산업단지 (변경없음)

구 분		면 적(m ²)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총 계		262,350.0	-	262,350.0	100.0	
공업 지역	소 계	262,350.0	-	262,350.0	100.0	
	전용공업지역	-	-	-	-	
	일반공업지역	262,350.0	-	262,350.0	100.0	
	준공업지역	-	-	-	-	
녹지 지역	소 계	-	-	-	-	
	보전녹지지역	-	-	-	-	
	생산녹지지역	-	-	-	-	
	자연녹지지역	-	-	-	-	

< 비도시지역 >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384,048,324	-	384,048,324	100.0	
도시지역		32,475,511	감) 2,808	32,472,703	8.5	
관 리 지 역	소 계	117,607,987	증) 742,289	118,350,276	30.8	
	계획관리지역	49,768,777	증) 253,884	50,022,661	13.0	
	생산관리지역	4,418,398	증) 4,709	4,423,107	1.2	
	보전관리지역	63,420,812	증) 483,696	63,904,508	16.6	
농림지역		232,748,826	감) 739,481	232,009,345	60.4	
자연환경보전지역		1,216,000	-	1,216,000	0.3	

□ 용도지역별 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적 (㎡)	용적률 (%)	결정(변경) 사유
		기 정	변 경			
계001	다산면 나정리 835-5번지 일원	농림지역	계획 관리지역	4,135	100	보전산지에서 해제된 농림지역 중 공장 용지로 개발 완료된 필지를 연결한 용도 지역인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계002	다산면 나정리 산100-7번지	보전 관리지역	계획 관리지역	3,656	100	기세분된 계획관리지역과 접한 지역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향후 개발여건 마련을 위하여 계획관리지역으로의 변경
계003	다산면 나정리 산171번지	농림지역	계획 관리지역	22	100	보전산지에서 해제된 농림지역을 연결한 용도지역인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계004	다산면 나정리 1068-2번지 일원	농림지역	계획 관리지역	3,887	100	보전산지에서 해제된 농림지역 중 공장용지로 개발 완료된 필지를 연결한 용도지역인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계005	다산면 노곡리 1242번지 일원	생산 관리지역	계획 관리지역	1,076	100	기세분된 계획관리지역 경계부에 위치한 적법훼손지를 연결한 용도지역인 계획 관리지역으로 현실화
계006	다산면 노곡리 1721-13번지 일원	농림지역	계획 관리지역	1	100	기세분된 계획관리지역 경계부에 위치한 자투리 용도지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계007	다산면 송곡리 110-3번지 일원	농림지역	계획 관리지역	13,479	100	보전산지에서 해제된 농림지역 중 공장 용지로 개발 완료된 필지를 연결한 용도 지역인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계008	다산면 송곡리 산70-4번지 일원	농림지역	계획 관리지역	4,829	100	보전산지에서 해제된 농림지역 중 개발 현황 등을 고려하여 연결한 용도지역인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도면표시 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적 (㎡)	용적률 (%)	결정(변경) 사유
		기 정	변 경			
계009	다산면 송곡리 138-16번지 일원	농림지역	계획 관리지역	357	100	보전산지에서 해제된 농림지역 중 개발 현황 등을 고려하여 연접한 용도지역인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계010	다산면 별지리 1231-8번지 일원	농림지역	계획 관리지역	190	100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된 농림지역을 연접한 용도지역인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계011	다산면 별지리 1093번지 일원	농림지역	계획 관리지역	156	100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된 농림지역을 연접한 용도지역인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계012	다산면 별지리 960-19번지 일원	농림지역	계획 관리지역	426	100	보전산지에서 해제된 농림지역 중 창고 용지로 개발 완료된 필지를 연접한 용도 지역인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계013	다산면 송곡리 산31-1번지 일원	농림지역	계획 관리지역	91	100	보전산지에서 해제된 농림지역을 연접한 용도지역인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계014	다산면 송곡리 산41-4번지 일원	농림지역	계획 관리지역	12	100	보전산지에서 해제된 농림지역 중 개발 현황 등을 고려하여 연접한 용도지역인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계015	덕곡면 본리리 298번지 일원	농림지역	계획 관리지역	1,315	100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된 농림지역을 연접한 용도지역인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계016	덕곡면 본리리 310번지 일원	농림지역	계획 관리지역	1,237	100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된 농림지역 중 개발현황 등을 고려하여 연접한 용도 지역인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계017	덕곡면 본리리 818-140번지 일원	농림지역	계획 관리지역	657	100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된 농림지역 중 개발현황 등을 고려하여 연접한 용도 지역인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계018	덕곡면 예리 산83번지 일원	농림지역	계획 관리지역	1	100	기세분된 계획관리지역 경계부에 위치한 자투리 용도지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계019	운수면 화암리 114-5번지 일원	농림지역	계획 관리지역	4,248	100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된 농림지역으로 토지이용계획 상 주거 및 근생시설이 밀집된 지역으로 토지이용현황을 반영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계020	운수면 화암리 351-1번지 일원	생산 관리지역	계획 관리지역	248	100	기세분된 계획관리지역 경계부에 위치한 적법훼손지를 연접한 용도지역인 계획 관리지역으로 현실화
계021	운수면 신간리 478-3번지 일원	농림지역	계획 관리지역	14	100	보전산지에서 해제된 농림지역 중 공장용지로 개발완료된 필지를 연접한 용도지역인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계022	운수면 봉평리 산88번지 일원	농림지역	계획 관리지역	2	100	기세분된 계획관리지역 경계부에 위치한 자투리 용도지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계023	성산면 용소리 841번지 일원	농림지역	계획 관리지역	1	100	기세분된 계획관리지역 경계부에 위치한 자투리 용도지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도면표시 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적 (㎡)	용적률 (%)	결정(변경) 사유
		기 정	변 경			
계024	다산면 송곡리 1036-11번지 일원	농림지역	계획 관리지역	230	100	보전산지에서 해제된 농림지역 중 창고용지로 개발완료된 필지를 연결한 용도지역인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계025	다산면 송곡리 1536-2번지 일원	농림지역	계획 관리지역	77	100	보전산지에서 해제된 농림지역을 연결한 용도지역인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계026	성산면 무계리 290-1번지	농림지역	계획 관리지역	331	100	보전산지에서 해제된 농림지역을 연결한 용도지역인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계027	성산면 무계리 182-1번지 일원	농림지역	계획 관리지역	21	100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된 농림지역 중 개발 현황 등을 고려하여 연결한 용도지역인 계획 관리지역으로 변경
계028	덕곡면 옥계리 101번지 일원	보전 관리지역	계획 관리지역	73	100	기세분된 계획관리지역 경계부에 위치한 적법훼손지 중 자투리 토지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계획관리지역으로 현실화
계029	운수면 봉평리 714-3번지 일원	농림지역	계획 관리지역	9,423	100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된 농림지역으로 토지이용계획 상 주거밀집지역으로 토지 이용현황을 반영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계030	운수면 봉평리 879-16번지 일원	농림지역	계획 관리지역	9	100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된 농림지역 중 개발현황 등을 고려하여 연결한 용도지역인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계031	운수면 월산리 77-22번지 일원	농림지역	계획 관리지역	438	100	보전산지에서 해제된 농림지역 중 주거 용지로 개발완료된 필지를 연결한 용도 지역인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계032	운수면 봉평리 917-1번지 일원	농림지역	계획 관리지역	9,580	100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된 농림지역으로 토지이용계획 상 주거밀집지역으로 토지 이용현황을 반영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계033	운수면 팔산리 산184-1번지 일원	농림지역	계획 관리지역	6	100	기세분된 계획관리지역 경계부에 위치한 자투리 용도지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계034	운수면 팔산리 146-1번지 일원	농림지역	계획 관리지역	6,131	100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된 농림지역 중 개발현황(도로) 등을 고려하여 연결한 용도지역인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계035	성산면 고탄리 579-6번지 일원	농림지역	계획 관리지역	521	100	보전산지에서 해제된 농림지역 중 공장 용지로 개발완료된 필지를 연결한 용도 지역인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계036	성산면 고탄리 산152번지 일원	농림지역	계획 관리지역	1	100	보전산지에서 해제된 농림지역을 연결한 용도지역인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계037	성산면 득성리 172-1번지 일원	농림지역	계획 관리지역	1	100	기세분된 계획관리지역 경계부에 위치한 자투리 용도지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계038	성산면 고탄리 47-3번지 일원	보전 관리지역	계획 관리지역	4,110	100	군계획시설(교통광장)로 위요된 지역으로 토지이용현황(한국전력공사 현장사무소)을 반영한 토지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도면표시 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적 (㎡)	용적률 (%)	결정(변경) 사유
		기 정	변 경			
계039	성산면 박곡리 215-3번지 일원	농림지역	계획 관리지역	2,734	100	보전산지에서 해제된 농림지역 중 공장 용지로 개발완료된 필지를 연결한 용도 지역인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계040	성산면 박곡리 508-2번지 일원	보전 관리지역	계획 관리지역	959	100	기세분된 보전관리지역으로 하수처리 예정구역 내 위치하며, 계획관리지역으로 위요된 지역으로 주변 용도지역과의 형평성 및 일관성 등을 고려하여 연결한 계획관리지역을 변경
계041	성산면 박곡리 524-1번지 일원	생산 관리지역	계획 관리지역	16	100	기세분된 계획관리지역 경계부에 위치한 적법훼손지 중 자투리 토지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계획관리지역으로 현실화
계042	성산면 박곡리 599번지 일원	보전 관리지역	계획 관리지역	9,144	100	지방도 905호선(성암로) 및 상용로에 따른 용도지역 단절과 양호한 접근성으로 개발압력이 가중되는 지역으로 토지이용 현황반영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계043	성산면 삼대리 91번지 일원	보전 관리지역	계획 관리지역	222	100	기세분된 계획관리지역 경계부에 위치한 적법훼손지 중 자투리 토지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계획관리지역으로 현실화
계044	대기야읍 신리 158-1번지 일원	농림지역	계획 관리지역	203	100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된 농림지역 중 주거용지로 개발완료된 필지를 연결한 용도지역인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계045	대기야읍 신리 584번지 일원	보전 관리지역	계획 관리지역	572	100	기세분된 계획관리지역 경계부에 위치한 적법훼손지를 연결한 용도지역인 계획 관리지역으로 현실화
계046	성산면 사부리 106-2번지 일원	농림지역	계획 관리지역	1	100	기세분된 계획관리지역 경계부에 위치한 자투리 용도지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계047	성산면 사부리 109번지 일원	보전 관리지역	계획 관리지역	181	100	기세분된 계획관리지역 경계부에 위치한 자투리 용도지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계048	성산면 기산리 252번지 일원	보전 관리지역	계획 관리지역	120	100	기세분된 계획관리지역 경계부에 위치한 적법훼손지를 연결한 용도지역인 계획 관리지역으로 현실화
계049	성산면 기산리 410-2번지 일원	보전 관리지역	계획 관리지역	1,614	100	토지이용현황을 반영한 토지의 효율성 제고와 주변 용도지역과의 연계성을 고려 하여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계050	성산면 득성리 산2-2번지 일원	농림지역	계획 관리지역	226	100	보전산지에서 해제된 농림지역 중 개발 현황 등을 고려하여 연결한 용도지역인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계051	성산면 어곡리 산15번지 일원	농림지역	계획 관리지역	45	100	기세분된 계획관리지역 경계부에 위치한 자투리 용도지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계052		보전 관리지역		104	100	

도면표시 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적 (㎡)	용적률 (%)	결정(변경) 사유
		기 정	변 경			
계053	성산면 오곡리 101번지 일원	보전 관리지역	계획 관리지역	259	100	기세분된 계획관리지역 경계부에 위치한 적법훼손지를 연결한 용도지역인 계획 관리지역으로 현실화
계054	성산면 오곡리 965번지 일원	농림지역	계획 관리지역	8,504	100	군도 4호선(개경포로)과 접하여 개발압력에 따른 여건변화(공장 등) 및 토지이용현황을 반영한 토지의 효율성 제고와 주변 용도 지역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계획관리지역 으로 변경
계055	개진면 인안리 235-1번지 일원	보전 관리지역	계획 관리지역	3,975	100	기세분된 보전관리지역으로 여건변화(창고) 및 토지이용 현황반영 및 계획관리지역 으로 위요된 지역으로 주변 용도지역 과의 형평성 및 일관성 등을 고려하여 연접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계056	쌍림면 월막리 산40-9번지 일원	농림지역	계획 관리지역	8,748	100	체육시설(마스터피스C.C)의 지적 불부합에 따른 지적경계로의 선형조정으로 용도지역 현실화
계057		보전 관리지역		148	100	
계058	쌍림면 고곡리 154-10번지 일원	농림지역	계획 관리지역	116	100	보전산지에서 해제된 농림지역 중 공장 용지로 개발 완료된 필지를 연결한 용도 지역인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계059	대가야읍 지산리 산118번지 일원	농림지역	계획 관리지역	1,814	100	체육시설(대가야C.C)의 지적 불부합에 따른 지적경계로의 선형조정으로 용도지역 현실화
계060	대가야읍 지산리 산118번지 일원	보전 관리지역	계획 관리지역	660	100	체육시설(대가야C.C)의 지적 불부합에 따른 지적경계로의 선형조정으로 용도지역 현실화
계061	쌍림면 고곡리 825-1번지 일원	보전 관리지역	계획 관리지역	5,926	100	지방도 907호선(쌍쌍로)과 접하여 접근성이 양호하며, 개발압력이 가중되는 지역으로 군계획시설(교통광장, 도로)로 위요된 지역으로 토지이용 현황반영 및 토지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계획관리지역 으로 변경
계062		보전 관리지역	계획 관리지역	15,018	100	
계063	개진면 양전리 681-1번지 일원	보전 관리지역	계획 관리지역	10,750	100	양전공업단지 및 주변 공업지역(개진농공 단지, 반운공단)의 개발가용지 부족에 따른 공업시설 입지여건 마련
계064	개진면 개포리 694-2번지 일원	농림지역	계획 관리지역	10	100	보전산지에서 해제된 농림지역을 연결한 용도지역인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계065	개진면 오사리 232-1번지 일원	농림지역	계획 관리지역	291	100	보전산지에서 해제된 농림지역을 연결한 용도지역인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계066	성산면 오곡리 산60-3번지 일원	농림지역	계획 관리지역	92	100	보전산지에서 해제된 농림지역 중 개발 현황 등을 고려하여 연결한 용도지역인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계067	성산면 오곡리 440번지	보전 관리지역	계획 관리지역	1,979	100	기세분된 계획관리지역 경계부에 위치한 보전관리지역의 현황분석 시 주변지역과 동일함에 따라 주변 용도지역인 계획관리 지역으로 변경

도면표시 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적 (㎡)	용적률 (%)	결정(변경) 사유
		기 정	변 경			
계068	개진면 생리 산24-5번지 일원	농림지역	계획 관리지역	24	100	보전산지에서 해제된 농림지역을 연결한 용도지역인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계069	개진면 부리 산32번지	보전 관리지역	계획 관리지역	3,836	100	기세분된 계획관리지역 경계부에 위치한 필지 내 용도지역이 혼재(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되어 관리 일원화를 위하여 보전산지가 지정된 농림지역을 제외한 주변 용도지역을 고려하여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계070	쌍림면 산당리 324-2번지 일원	농림지역	계획 관리지역	1	100	기세분된 계획관리지역 경계부에 위치한 자투리 용도지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계071	쌍림면 송림리 495-20번지 일원	농림지역	계획 관리지역	1	100	기세분된 계획관리지역 경계부에 위치한 자투리 용도지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계072	쌍림면 매촌리 436-4번지 일원	농림지역	계획 관리지역	1	100	기세분된 계획관리지역 경계부에 위치한 자투리 용도지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계073	쌍림면 안림리 산67번지 일원	농림지역	계획 관리지역	23	100	보전산지에서 해제된 농림지역 중 개발 현황 등을 고려하여 연결한 용도지역인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계074	쌍림면 매촌리 468-11번지 일원	농림지역	계획 관리지역	1	100	기세분된 계획관리지역 경계부에 위치한 자투리 용도지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계075	쌍림면 매촌리 산12-7번지 일원	농림지역	계획 관리지역	1	100	기세분된 계획관리지역 경계부에 위치한 자투리 용도지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계076	쌍림면 송림리 42-54번지 일원	생산 관리지역	계획 관리지역	660	100	기세분된 계획관리지역 경계부에 위치한 적법훼손지를 연결한 용도지역인 계획 관리지역으로 현실화
계077	쌍림면 귀원리 산8-2번지 일원	농림지역	계획 관리지역	1	100	귀원지구(개발진흥지구) 내 농림지역으로 관련지침에 부합하도록 용도지역 변경
계078	쌍림면 안림리 517-14번지 일원	농림지역	계획 관리지역	1,213	100	보전산지에서 해제된 농림지역 중 주거 용지로 개발 완료된 필지를 연결한 용도 지역인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계079	쌍림면 안림리 368번지 일원	보전 관리지역	계획 관리지역	53,538	100	지방도 907호선(쌍쌍로) 및 고령IC 교차로 등과 접하여 접근성이 양호하며, 개발압력이 가중되는 지역으로 군계획 시설(도로, 교통광장)로 위요·단절된 지역으로 토지이용 현황반영(딸기 가관대 및 편의점 등)을 위한 양성화 및 토지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연결 용도지역인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도면표시 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적 (㎡)	용적률 (%)	결정(변경) 사유
		기 정	변 경			
계080	쌍림면 안림리 282-11번지 일원	생산 관리지역	계획 관리지역	51	100	기세분된 계획관리지역 경계부에 위치한 적법훼손지 중 자투리 토지의 관리를 위하여 계획관리지역으로 현실화
계081	쌍림면 신곡리 211-1번지 일원	생산 관리지역	계획 관리지역	555	100	기세분된 계획관리지역 경계부에 위치한 적법훼손지를 연결한 용도지역인 계획 관리지역으로 현실화
계082	쌍림면 안화리 53-17번지 일원	농림지역	계획 관리지역	1	100	기세분된 계획관리지역 경계부에 위치한 자투리 용도지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계083	대가야읍 내곡리 1078-2번지 일원 (유니벨리C.O)	농림지역	계획 관리지역	49,715	100	보전산지에서 해제된 농림지역 중 개발 현황 등을 고려하여 연결한 용도지역인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계084	우곡면 속리 54-번지 일원	농림지역	계획 관리지역	1	100	기세분된 계획관리지역 경계부에 위치한 자투리 용도지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계085	우곡면 속리 7번지 일원	농림지역	계획 관리지역	1	100	기세분된 계획관리지역 경계부에 위치한 자투리 용도지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계086	우곡면 속리 산16-1번지 일원	농림지역	계획 관리지역	74	100	보전산지에서 해제된 농림지역을 연결한 용도지역인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계087	우곡면 속리 산30-7번지 일원	농림지역	계획 관리지역	233	100	보전산지에서 해제된 농림지역을 연결한 용도지역인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계088	우곡면 도진리 산16-2번지 일원	농림지역	계획 관리지역	4	100	기세분된 계획관리지역 경계부에 위치한 자투리 용도지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계089	우곡면 야정리 일원	보전 관리지역	계획 관리지역	1	100	기세분된 계획관리지역 경계부에 위치한 자투리 용도지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계090	우곡면 도진리 578-1번지 일원	보전 관리지역	계획 관리지역	1	100	도진지구(개발진흥지구) 내 기세분된 보전 관리지역으로 관련지침에 부합하도록 지구 경계에 맞게 용도지역 변경
계091	쌍림면 매촌리 444번지 일원	농림지역	계획 관리지역	1	100	기세분된 계획관리지역 경계부에 위치한 자투리 용도지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계092	쌍림면 매촌리 448번지 일원	농림지역	계획 관리지역	1	100	기세분된 계획관리지역 경계부에 위치한 자투리 용도지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계093	쌍림면 함가리 639번지 일원	농림지역	계획 관리지역	12	100	기세분된 계획관리지역 경계부에 위치한 자투리 용도지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계094	쌍림면 매촌리 71-2번지 일원	농림지역	계획 관리지역	1,481	100	보전산지에서 해제된 농림지역 중 공장 용지로 개발 완료된 필지를 연결한 용도 지역인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도면표시 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적 (㎡)	용적률 (%)	결정(변경) 사유
		기 정	변 경			
계095	쌍림면 합가리 산194-4번지 일원	농림지역	계획 관리지역	2	100	보전산지에서 해제된 농림지역을 연결한 용도지역인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계096		보전 관리지역	계획 관리지역	3	100	기세분된 계획관리지역 경계부에 위치한 자투리 용도지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계097	쌍림면 합가리 산194-5번지 일원	보전 관리지역	계획 관리지역	77	100	기세분된 계획관리지역 경계부에 위치한 적법훼손지를 연결한 용도지역인 계획 관리지역으로 현실화
계098	쌍림면 신곡리 545번지 일원	농림지역	계획 관리지역	2	100	보전산지에서 해제된 농림지역 중 공장 용지(골재장)로 개발 완료된 필지를 연결한 용도지역인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계099	우곡면 사진리 산28-1번지 일원	농림지역	계획 관리지역	195	100	보전산지에서 해제된 농림지역을 연결한 용도지역인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계100	우곡면 사전리 85-1번지 일원	생산 관리지역	계획 관리지역	395	100	기세분된 계획관리지역 경계부에 위치한 적법훼손지를 연결한 용도지역인 계획 관리지역으로 현실화
계101	우곡면 대곡리 1138번지 일원	보전 관리지역	계획 관리지역	3,703	100	기세분된 계획관리지역 경계부에 위치한 적법훼손지를 연결한 용도지역인 계획 관리지역으로 현실화
계102	우곡면 도진리 752번지 일원	농림지역	계획 관리지역	1	100	도진지구(개발진흥지구) 내 기세분된 보전 관리지역으로 관련지침에 부합하도록 지구 경계에 맞게 용도지역 변경
계103	우곡면 예곡리 406번지 일원	농림지역	계획 관리지역	88	100	보전산지에서 해제된 농림지역을 연결한 용도지역인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계104	우곡면 연리 424번지 일원	보전 관리지역	계획 관리지역	223	100	기세분된 계획관리지역 경계부에 위치한 적법훼손지를 연결한 용도지역인 계획 관리지역으로 현실화
생001	다산면 노곡리 1740번지 일원	농림지역	생산 관리지역	1	80	기세분된 생산관리지역 경계부에 위치한 자투리 용도지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
생002	다산면 노곡리 728-3번지 일원	농림지역	생산 관리지역	1	80	기세분된 생산관리지역 경계부에 위치한 자투리 용도지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
생003	다산면 별지리 679번지 일원	농림지역	생산 관리지역	4,553	80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된 농림지역 중 토지이용현황 등을 고려하여 생산관리 지역으로 변경
생004	운수면 화암리 7-2번지 일원	농림지역	생산 관리지역	3	80	기세분된 생산관리지역 경계부에 위치한 자투리 용도지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
생005	운수면 화암리 4-3번지 일원	농림지역	생산 관리지역	3	80	기세분된 생산관리지역 경계부에 위치한 자투리 용도지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

도면표시 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적 (㎡)	용적률 (%)	결정(변경) 사유
		기 정	변 경			
생006	운수면 화암리 43번지 일원	농림지역	생산 관리지역	1	80	기세분된 생산관리지역 경계부에 위치한 자투리 용도지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
생007	우곡면 연리 665-4번지 일원	농림지역	생산 관리지역	1,739	80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된 농림지역을 연결한 용도지역인 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
생008	우곡면 연리 562-5번지 일원	농림지역	생산 관리지역	1,391	80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된 농림지역을 연결한 용도지역인 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
생009	우곡면 객기리 일원	농림지역	생산 관리지역	18	80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된 농림지역 중 토지이용현황 등을 고려하여 생산관리 지역으로 변경
보001	다산면 나정리 46번지 일원	농림지역	보전 관리지역	7	80	보전산지에서 해제된 농림지역을 연결한 용도지역인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
보002	다산면 월성리 산22번지 일원	농림지역	보전 관리지역	8	80	보전산지에서 해제된 농림지역 중 토지이용현황 등을 고려하여 보전관리 지역으로 변경
보003	덕곡면 노리 1181번지 일원	농림지역	보전 관리지역	21	80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된 농림지역을 연접한 용도지역인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
보004	운수면 대평리 산121-1번지 일원	농림지역	보전 관리지역	46,885	80	보전산지에서 해제된 농림지역을 연결한 용도지역인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
보005	운수면 대평리 산137-2번지 일원	농림지역	보전 관리지역	11,392	80	보전산지에서 해제된 농림지역을 연결한 용도지역인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
보006	운수면 대평리 산139-4번지 일원	농림지역	보전 관리지역	1,692	80	보전산지에서 해제된 농림지역을 연결한 용도지역인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
보007	운수면 대평리 산165-1번지 일원	농림지역	보전 관리지역	1,248	80	보전산지에서 해제된 농림지역을 연결한 용도지역인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
보008	운수면 대평리 산329번지 일원	농림지역	보전 관리지역	1	80	기세분된 보전관리지역 경계부에 위치한 자투리 용도지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
보009	운수면 대평리 산152번지 일원	농림지역	보전 관리지역	10,580	80	보전산지에서 해제된 농림지역을 연결한 용도지역인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
보010	다산면 월성리 산65-6번지 일원	농림지역	보전 관리지역	1	80	기세분된 보전관리지역 경계부에 위치한 자투리 용도지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
보011	덕곡면 노리 231-3번지 일원	농림지역	보전 관리지역	761	80	보전산지에서 해제된 농림지역을 연결한 용도지역인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
보012	운수면 화암리 8-8번지 일원	농림지역	보전 관리지역	1	80	기세분된 보전관리지역 경계부에 위치한 자투리 용도지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
보013	운수면 화암리 868-1번지 일원	농림지역	보전 관리지역	1	80	기세분된 보전관리지역 경계부에 위치한 자투리 용도지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
보014	중부내륙 고속국도	농림지역	보전 관리지역	430,276	80	보전산지에서 해제된 중부내륙고속도로 부지를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

도면표시 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적 (㎡)	용적률 (%)	결정(변경) 사유
		기 정	변 경			
보015	다산면 송곡리 산75-1번지 일원	농림지역	보전 관리지역	17,521	80	보전산지에서 해제된 농림지역 중 토지이용현황 등을 고려하여 보전관리 지역으로 변경
보016	다산면 송곡리 1080번지 일원	농림지역	보전 관리지역	199	80	보전산지에서 해제된 농림지역 중 토지이용현황 등을 고려하여 보전관리 지역으로 변경
보017	다산면 송곡리 1633-4번지 일원	농림지역	보전 관리지역	485	80	보전산지에서 해제된 농림지역 중 토지이용현황 등을 고려하여 보전관리 지역으로 변경
보018	다산면 송곡리 1633-6번지 일원	농림지역	보전 관리지역	16	80	보전산지에서 해제된 농림지역 중 토지이용현황 등을 고려하여 보전관리 지역으로 변경
보019	다산면 송곡리 1633번지 일원	농림지역	보전 관리지역	2	80	기세분된 보전관리지역 경계부에 위치한 자투리 용도지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
보020	덕곡면 옥계리 산31-14번지 일원	농림지역	보전 관리지역	1,310	80	보전산지에서 해제된 농림지역을 연결한 용도지역인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
보021	덕곡면 옥계리 산26-1번지 일원	농림지역	보전 관리지역	104	80	보전산지에서 해제된 농림지역을 연결한 용도지역인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
보022	덕곡면 용흥리 547-1번지 일원	농림지역	보전 관리지역	1	80	기세분된 보전관리지역 경계부에 위치한 자투리 용도지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
보023	대가야읍 저진리 73번지 일원	농림지역	보전 관리지역	249	80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된 농림지역을 연접한 용도지역인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
보024	대가야읍 저진리 888-165번지 일원	농림지역	보전 관리지역	1	80	기세분된 보전관리지역 경계부에 위치한 자투리 용도지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
보025	대가야읍 본관리 418번지 일원	농림지역	보전 관리지역	215	80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된 농림지역을 연접한 용도지역인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
보026	운수면 월산리 47-96번지 일원	농림지역	보전 관리지역	1	80	기세분된 보전관리지역 경계부에 위치한 자투리 용도지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
보027	운수면 팔산리 324번지 일원	농림지역	보전 관리지역	1	80	기세분된 보전관리지역 경계부에 위치한 자투리 용도지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
보028	성산면 용소리 263-2번지 일원	농림지역	보전 관리지역	47	80	보전산지에서 해제된 농림지역을 연결한 용도지역인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
보029	성산면 고탄리 산21-1번지 일원	농림지역	보전 관리지역	1	80	기세분된 보전관리지역 경계부에 위치한 자투리 용도지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
보030	성산면 득성리 산1-1번지 일원	농림지역	보전 관리지역	1	80	기세분된 보전관리지역 경계부에 위치한 자투리 용도지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

도면표시 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적 (㎡)	용적률 (%)	결정(변경) 사유
		기 정	변 경			
보031	성산면 고탄리 산131-3번지 일원	농림지역	보전 관리지역	168	80	보전산지에서 해제된 농림지역 중 토지이용현황 등을 고려하여 보전관리 지역으로 변경
보032	성산면 박곡리 328-3번지 일원	농림지역	보전 관리지역	423	80	보전산지에서 해제된 농림지역 중 토지이용현황 등을 고려하여 보전관리 지역으로 변경
보033	성산면 무계리 169-40번지 일원	농림지역	보전 관리지역	2,293	80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된 농림지역 중 토지이용현황 등을 고려하여 보전관리 지역으로 변경
보034	성산면 박곡리 616-4번지 일원	농림지역	보전 관리지역	1	80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된 농림지역 중 토지이용현황 등을 고려하여 보전관리 지역으로 변경
보035	대가야읍 본관리 842-1번지 일원	자연 녹지지역	보전 관리지역	43	80	중로1-3호선 실효(경고 제2020-778호)에 따른 관련지침에 부합하도록 도로 경계에 맞게 용도지역 조정 및 도시지역 축소 - 주·상·공업지역 경계의 일반도로인 경우에는 녹지지역이 아닌 지역으로 설정
보036	성산면 사부리 산16번지 일원	농림지역	보전 관리지역	1	80	기세분된 보전관리지역 경계부에 위치한 자투리 용도지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
보037	성산면 사부리 470-3번지 일원	농림지역	보전 관리지역	40	80	보전산지에서 해제된 농림지역을 연접한 용도지역인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
보038	성산면 사부리 791-5번지 일원	농림지역	보전 관리지역	1	80	기세분된 보전관리지역 경계부에 위치한 자투리 용도지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
보039	성산면 기산리 884-2번지 일원	농림지역	보전 관리지역	1	80	기세분된 보전관리지역 경계부에 위치한 자투리 용도지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
보040	성산면 사부리 388-5번지 일원	농림지역	보전 관리지역	2	80	기세분된 보전관리지역 경계부에 위치한 자투리 용도지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
보041	성산면 사부리 717-5번지 일원	농림지역	보전 관리지역	2	80	기세분된 보전관리지역 경계부에 위치한 자투리 용도지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
보042	개진면 양전리 산142번지 일원	농림지역	보전 관리지역	196	80	보전산지에서 해제된 농림지역을 연접한 용도지역인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
보043	성산면 기산리 917번지 일원	농림지역	보전 관리지역	68	80	보전산지에서 해제된 농림지역을 연접한 용도지역인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
보044	성산면 기족리 산169번지 일원	농림지역	보전 관리지역	1	80	기세분된 보전관리지역 경계부에 위치한 자투리 용도지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
보045	성산면 득성리 401-6번지 일원	농림지역	보전 관리지역	1	80	기세분된 보전관리지역 경계부에 위치한 자투리 용도지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

도면표시 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적 (㎡)	용적률 (%)	결정(변경) 사유
		기 정	변 경			
보046	성산면 삼대리 산85-2번지 일원	농림지역	보전 관리지역	1	80	기세분된 보전관리지역 경계부에 위치한 자투리 용도지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
보047	개진면 인안리 산2-2번지 일원	농림지역	보전 관리지역	1	80	기세분된 보전관리지역 경계부에 위치한 자투리 용도지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
보048	쌍림면 용리 산172-3번지 일원	농림지역	보전 관리지역	680	80	보전산지에서 해제된 농림지역을 연접한 용도지역인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
보049	쌍림면 월막리 산45-7번지 일원	농림지역	보전 관리지역	7,982	80	보전산지에서 해제된 농림지역 중 토지이용현황 등을 고려하여 보전관리 지역으로 변경
보050	쌍림면 월막리 산40-9번지 일원	계획 관리지역	보전 관리지역	1,668	80	체육시설(마스터피스C.C)의 지적 불부합에 따른 지적경계로의 선형조정으로 용도지역 현실화
보051	쌍림면 월막리 산27-2번지 일원	농림지역	보전 관리지역	131	80	보전산지에서 해제된 농림지역을 연접한 용도지역인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
보052	대가야읍 외리 산46번지 일원	농림지역	보전 관리지역	2	80	기세분된 보전관리지역 경계부에 위치한 자투리 용도지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
보053	대가야읍 외리 748-5번지 일원	농림지역	보전 관리지역	355	80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된 농림지역을 연접한 용도지역인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
보054	대가야읍 외리 1178-13번지 일원	농림지역	보전 관리지역	3	80	기세분된 보전관리지역 경계부에 위치한 자투리 용도지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
보055	쌍림면 고곡리 815-4번지 일원	농림지역	보전 관리지역	2	80	기세분된 보전관리지역 경계부에 위치한 자투리 용도지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
보056	쌍림면 안림리 318-6번지 일원	농림지역	보전 관리지역	1	80	기세분된 보전관리지역 경계부에 위치한 자투리 용도지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
보057	개진면 양전리 산79-3번지 일원	농림지역	보전 관리지역	89	80	보전산지에서 해제된 농림지역 중 토지이용현황 등을 고려하여 보전관리 지역으로 변경
보058	개진면 양전리 산89-7번지 일원	농림지역	보전 관리지역	183	80	보전산지에서 해제된 농림지역 중 토지이용현황 등을 고려하여 보전관리 지역으로 변경
보059	대가야읍 장기리 산50-2번지 일원	농림지역	보전 관리지역	105	80	보전산지에서 해제된 농림지역 중 토지이용현황 등을 고려하여 보전관리 지역으로 변경
보060	대가야읍 외리 산41-4번지 일원	농림지역	보전 관리지역	2,299	80	보전산지에서 해제된 농림지역 중 토지이용현황 등을 고려하여 보전관리 지역으로 변경

도면표시 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적 (㎡)	용적률 (%)	결정(변경) 사유
		기 정	변 경			
보061	대가야읍 내곡리 산110-3번지 일원	농림지역	보전 관리지역	4,325	80	보전산지에서 해제된 농림지역 중 토지이용현황 등을 고려하여 보전관리 지역으로 변경
보062	개진면 오사리 692-3번지 일원	농림지역	보전 관리지역	2	80	기세분된 보전관리지역 경계부에 위치한 자투리 용도지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
보063	쌍림면 산당리 131-1번지 일원	농림지역	보전 관리지역	1,948	80	보전산지에서 해제된 농림지역 중 토지이용현황 등을 고려하여 보전관리 지역으로 변경
보064	쌍림면 매촌리 112번지 일원	농림지역	보전 관리지역	230	80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된 농림지역을 연접한 용도지역인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
보065	쌍림면 평지리 199-1번지 일원	농림지역	보전 관리지역	157	80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된 농림지역을 연접한 용도지역인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
보066	쌍림면 평지리 201-7번지 일원	농림지역	보전 관리지역	286	80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된 농림지역을 연접한 용도지역인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
보067	대가야읍 내곡리 1045-2번지 일원	농림지역	보전 관리지역	2	80	기세분된 보전관리지역 경계부에 위치한 자투리 용도지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
보068	우곡면 속리 산8-1번지 일원	농림지역	보전 관리지역	8,621	80	보전산지에서 해제된 농림지역 중 토지이용현황 등을 고려하여 보전관리 지역으로 변경
보069	우곡면 사촌리 744번지 일원	농림지역	보전 관리지역	106	80	보전산지에서 해제된 농림지역을 연접한 용도지역인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
보070	우곡면 야정리 산18-8번지 일원	농림지역	보전 관리지역	565	80	보전산지에서 해제된 농림지역을 연접한 용도지역인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
보071	쌍림면 합가리 산99-2번지 일원	농림지역	보전 관리지역	2,368	80	보전산지에서 해제된 농림지역을 연접한 용도지역인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
보072	쌍림면 합가리 산73-1번지 일원	농림지역	보전 관리지역	15,679	80	보전산지에서 해제된 농림지역 중 토지이용현황 등을 고려하여 보전관리 지역으로 변경
보073	쌍림면 매촌리 79-7번지 일원	농림지역	보전 관리지역	1	80	기세분된 보전관리지역 경계부에 위치한 자투리 용도지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
보074	쌍림면 합가리 산10-1번지 일원	농림지역	보전 관리지역	9,238	80	보전산지에서 해제된 농림지역 중 토지이용현황 등을 고려하여 보전관리 지역으로 변경
보075	쌍림면 합가리 산15-1번지 일원	농림지역	보전 관리지역	19,512	80	보전산지에서 해제된 농림지역 중 토지이용현황 등을 고려하여 보전관리 지역으로 변경
보076	쌍림면 평지리 219-1번지 일원	농림지역	보전 관리지역	981	80	보전산지에서 해제된 농림지역 중 토지이용현황 등을 고려하여 보전관리 지역으로 변경

도면표시 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적 (㎡)	용적률 (%)	결정(변경) 사유
		기 정	변 경			
보077	우곡면 대곡리 산42-3번지 일원	농림지역	보전 관리지역	753	80	보전산지에서 해제된 농림지역 중 토지이용현황 등을 고려하여 보전관리 지역으로 변경
보078	우곡면 답곡리 589번지 일원	농림지역	보전 관리지역	1	80	기세분된 보전관리지역 경계부에 위치한 자투리 용도지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
보079	우곡면 포리 1539번지 일원	농림지역	보전 관리지역	1	80	기세분된 보전관리지역 경계부에 위치한 자투리 용도지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
보080	우곡면 포리 191-2번지 일원	농림지역	보전 관리지역	1	80	기세분된 보전관리지역 경계부에 위치한 자투리 용도지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
농027	대가야읍 현문리 21-14번지 일원	제1종일반 주거지역	농림지역	2,646	80	중로1-3호선 실효(경고 제2020-778호)에 따른 관련지침에 부합하도록 도로 경계에 맞게 용도지역 조정 및 도시지역 축소 - 주·상·공업지역 경계의 일반도로인 경우에는 녹지지역이 아닌 지역으로 설정
농028	대가야읍 본관리 850-3번지 일원	자연 녹지지역	농림지역	119	80	
농037	쌍림면 월막리 산40-9번지 일원	계 획 관리지역	농림지역	4,990	80	체육시설(마스터피스C.C)의 지적 불부합에 따른 지적경계로의 선형조정으로 용도지역 현실화
농040	대가야읍 지산리 산118번지 일원	계 획 관리지역	농림지역	963	80	체육시설(대가야C.C)의 지적 불부합에 따른 지적경계로의 선형조정으로 용도지역 현실화
농052	대가야읍 내곡리 일원 (유니밸리C.C)	계 획 관리지역	농림지역	39	80	체육시설(유니밸리C.C)의 지적 불부합에 따른 지적경계로의 선형조정으로 용도지역 현실화

2 용도지구 결정(변경)(안) 조서

가. 고도지구

< 대가야도시지역 >

구분	도 면 표시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 치	고 도 제한내용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폐지	6	쾌빈지구	최고고도지구	대가야읍 쾌빈리 385-2 일원	H=45m이하	75,247	경고제1996-85호 (96.07.01)	

변경사유서

도 면 표시번호	지구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6	쾌빈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고고도지구 폐지 - H = 45m 이하 - A = 75,24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재현상변경 허용기준(제2018-4호, 32m 이상 개별심의)과 최고고도지구의 이중규제를 해소하고 최고고도지구보다 허용기준을 강화하고 있는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최고 고도지구 폐지

나. 개발진흥지구

< 비도시지역 >

구분	도 면 표시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 치	제한내용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2-1-3	예리지구	주거개발 진흥지구	덕곡면 예리 159-2번지 일원	-	84,979	고고제1996-21호 (96.02.29.)	
기정	3-1-1	봉평지구	주거개발 진흥지구	운수면 봉평리 830-2번지 일원	-	106,180	고고제1994-152호 (94.10.29.)	
기정	4-1-5	어곡·득성 지구	주거개발 진흥지구	성산면 어곡리 228-3, 득성리 208-1 일원	-	271,194	고고제1994-420호 (92.12.10.)	
변경	4-1-5	어곡·득성 지구	주거개발 진흥지구	성산면 어곡리 228-3, 득성리 208-1 일원	-	270,814	“	
기정	6-1-6	개포지구	주거개발 진흥지구	개진면 개포리 230번지 일원	-	55,861	고고제2002-185호 (02.09.14.)	
기정	7-1-7	도진지구	주거개발 진흥지구	우곡면 도진리 199번지 일원	-	151,420	고고제2002-186호 (02.09.14.)	
기정	8-1-2	귀원지구	주거개발 진흥지구	쌍림면 귀원리 206-3번지 일원	-	147,870	고고제1994-160호 (94.11.04.)	
폐지	6-2-4	개진석산 개발지구	산업개발 진흥지구	개진면 직리 271-1, 신안리 535-2 일원	-	9,837	고고제2000-227호 (00.12.30.)	

□ 변경사유서

도 면 표시번호	지구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4-1-5	어곡특성지구	○ 주거개발진흥지구 면적 변경 - A = 271,194㎡ → 270,814㎡ 감) 380㎡	○ 군계획시설 현황반영에 따른 변경으로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주거개발진흥지구 경계 조정
6-2-4	개진석산개발지구	○ 산업개발진흥지구 폐지 - A = 9,837㎡ → 0㎡ 감) 9,837㎡	○ 개진석산개발지구의 열외일반산업단지로서의 변경(14.12.)시 존치된 비정형화 잔여부지로 해당 산업개발진흥지구 폐지

③ 군계획시설 결정(변경)(안) 조서

가. 교통시설

1) 도로

■ 도로 결정(변경) 조서

< 대가야읍 도시지역 >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대로	1	1	20~35	주간선도로	674	장기리 구역계	헌문리 353-4 (1호광장)	일반도로	-	건고제1971-587호 (71.09.30.)	지방도 67호선
변경	대로	1	1	20~35	보조간선	674	장기리 구역계	헌문리 353-4 (1호광장)	일반도로	-	〃	〃
기정	대로	3	4	25~28	주간선도로	1,725	헌문리 327-2 (1호광장)	지산리 산22-2	일반도로	-	건고제1971-587호 (71.09.30.)	군도 1호선
변경	대로	3	4	25~28	보조간선	1,725	헌문리 327-2 (1호광장)	지산리 산22-2	일반도로	-	〃	〃
기정	중로	1	2	20~22	주간선도로	1,421	지산리 산22-2 (대로3-4)	지산리 산134-4 (대로3-2)	일반도로	-	건고제1971-587호 (71.09.30.)	
변경	중로	1	2	20~22	보조간선	1,421	지산리 산22-2 (대로3-4)	지산리 산134-4 (대로3-2)	일반도로	-	〃	

※ () : 도시지역 내 연장

□ 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대로1-1	대로1-1	○ 기능변경 - 주간선도로 → 보조간선도로	○ 체계적 관리를 위한 도로기능 변경
대로3-4	대로3-4	○ 기능변경 - 주간선도로 → 보조간선도로	○ 체계적 관리를 위한 도로기능 변경
중로1-2	중로1-2	○ 일부구간 선형변경 및 기능변경 - 주간선도로 → 보조간선도로	○ 개설현황을 반영한 일부구간 선형변경 및 도로위계 정비를 통한 체계적 관리

< 비도시지역 >

구분	규모				기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1	중부 D	23~39	주간선 도로	2,923	성산면 삼대리 산3-3	성산면 강정리 197	일반 도로	-	경고제2011-19호 (11.01.06.)	광주대구 고속
변경	대로	1	중부 D	23~39	주간선 도로	2,705	성산면 삼대리 산3-3	성산면 득성리 236	일반 도로	-	〃	〃
변경	대로	1	중부 F	23~39	주간선 도로	548	성산면 박곡리 694-1	성산면 박곡리 599-1	일반 도로	-	-	광주대구 고속
기정	대로	1	중부 E	23~39	주간선 도로	4,491	성산면 대흥리 168	성산면 상용리 산2-1	일반 도로	-	경고제2011-19호 (11.01.06.)	중부 내륙
변경	대로	1	중부 E	23~39	주간선 도로	4,488	성산면 대흥리 168	성산면 상용리 산2-1	일반 도로	-	〃	〃
기정	대로	2	新 88D	23~31	주간선 도로	7,647	대가야읍 장기리 산50-2	쌍림면 월막리 산42-7	일반 도로	-	경고제2011-19호 (11.01.06.)	광주대구 고속
변경	대로	2	新 88D	23~31	주간선 도로	3,415	대가야읍 장기리 산50-2	쌍림면 안림리 773-216	일반 도로	-	〃	〃
변경	대로	2	新 88F	23~31	주간선 도로	2,999	쌍림면 고곡리 681-4	쌍림면 월막리 산42-7	일반 도로	-	〃	〃
기정	중로	1	국 33A	18~21	보조 간선	4,781	쌍림면 합가리 881	쌍림면 합가리 497-9	일반 도로	-	경고제2011-19호 (11.01.06.)	국도 33호선
변경	중로	1	국 33A	18~21	주간선 도로	4,781	쌍림면 합가리 881	쌍림면 합가리 497-9	일반 도로	-	〃	〃
기정	중로	1	국 33B	18~22	보조 간선	5,540	쌍림면 합가리 497-9	대가야읍 외리 1178-1	일반 도로	-	경고제2011-19호 (11.01.06.)	국도 33호선
변경	중로	1	국 33B	18~22	주간선 도로	5,540	쌍림면 합가리 497-9	대가야읍 외리 1178-1	일반 도로	-	〃	〃
기정	중로	1	국 33C	20	보조 간선	7,385	대가야읍 현문리 334-1	운수면 화암리 8-1	일반 도로	-	경고제2011-19호 (11.01.06.)	국도 33호선
변경	중로	1	국 33C	20	주간선 도로	7,385	대가야읍 현문리 334-1	운수면 화암리 8-1	일반 도로	-	〃	〃
기정	중로	1	국 26A	19~22	보조 간선	1,356	삼대리 41-10	득성리 353	일반 도로	-	경고제2011-19호 (11.01.06.)	국도 26호선
변경	중로	1	국 26A	19~22	주간선 도로	1,356	삼대리 41-10	득성리 353	일반 도로	-	〃	〃
기정	중로	1	국 26B	19~22	보조 간선	7,099	득성리 137-1	사부리 산181-9	일반 도로	-	경고제2011-19호 (11.01.06.)	국도 26호선
변경	중로	1	국 26B	19~22	주간선 도로	7,099	득성리 137-1	사부리 산181-9	일반 도로	-	〃	〃
기정	중로	1	국 26C	19~22	보조 간선	752	현문리 산5-1	현문리 334-1	일반 도로	-	경고제2011-19호 (11.01.06.)	국도 26호선
변경	중로	1	국 26C	19~22	주간선 도로	752	현문리 산5-1	현문리 334-1	일반 도로	-	〃	〃
기정	중로	1	국 26F	19~22	보조 간선	5,895	쌍림면 귀원리 342-1	쌍림면 산주리 118	일반 도로	-	경고제2011-19호 (11.01.06.)	국도 26호선
변경	중로	1	국 26F	19~22	주간선 도로	5,895	쌍림면 귀원리 342-1	쌍림면 산주리 118	일반 도로	-	〃	〃
기정	중로	3	11	13	주간선 도로	874	쌍림면 귀원리 36-3	쌍림면 귀원리 323-3	일반 도로	-	고고제1994-160호 (94.11.04.)	귀원 지구
변경	중로	3	11	13	보조 간선	874	쌍림면 귀원리 36-3	쌍림면 귀원리 323-3	일반 도로	-	〃	〃
신설	중로	3	12	8~12	주간선 도로	752	쌍림면 귀원리 323-3	쌍림면 합가리 14-2	일반 도로	-	-	국도 26호선

□ 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고
대로1-중부D	대로1-중부D	○노선축소 - L = 2,923m → 2,705m 감) 218m	○교차점광장(동고령IC) 확장에 따른 체계적 관리를 위한 노선축소	광주·대구 고속
	대로1-중부F	○노선분리 및 일부구간 선형변경 - B = 23-39m - L = 548m	○대로1-중부D호선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노선분리 및 일부구간 선형변경	광주·대구 고속
대로1-중부E	대로1-중부E	○노선축소 - L = 4,491m → 4,488m 감) 3m	○교차점광장(동고령IC) 확장에 따른 체계적 관리를 위한 노선축소	중부내륙
대로2-新88D	대로2-新88D	○노선축소 - L = 7,647m → 3,415m 감) 4,232m	○교통광장(동고령IC) 확장에 따른 체계적 관리를 위한 노선축소	광주·대구 고속
	대로2-新88F	○노선분리 및 일부구간 선형변경 - B = 23-31m - L = 2,999m	○대로2-新88D호선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노선분리 및 지적 불부합에 따른 지적경계로의 일부구간 선형조정	광주·대구 고속
중로1-국33A	중로1-국33A	○일부구간 선형변경 및 기능변경 - 보조간선도로 → 주간선도로	○중로3-12호선 노선신설에 따른 일부구간 선형변경 및 도로위계 정비를 통한 체계적 관리	국도 33호선
중로1-국33B	중로1-국33B	○일부구간 선형변경 및 기능변경 - 보조간선도로 → 주간선도로	○중로1-국33B호선의 중복결정 구간 제척 및 도로위계 정비를 통한 체계적 관리	국도 33호선
중로1-국33C	중로1-국33C	○일부구간 선형변경 및 기능변경 - 보조간선도로 → 주간선도로	○중로1-국33C호선과 중로2-국지67C호선의 중복결정 구간 제척을 위한 일부구간 선형변경 및 도로위계 정비를 통한 체계적 관리	국도 33호선
중로1-국26A	중로1-국26A	○기능변경 - 보조간선도로 → 주간선도로	○도로위계 정비를 통한 체계적 관리	국도 26호선
중로1-국26B	중로1-국26B	○기능변경 - 보조간선도로 → 주간선도로	○도로위계 정비를 통한 체계적 관리	국도 26호선
중로1-국26C	중로1-국26C	○기능변경 - 보조간선도로 → 주간선도로	○도로위계 정비를 통한 체계적 관리	국도 26호선
중로1-국26F	중로1-국26F	○기능변경 - 보조간선도로 → 주간선도로	○도로위계 정비를 통한 체계적 관리	국도 26호선
중로3-11	중로3-11	○일부구간 선형변경 및 기능변경 - 주간선도로 → 보조간선도로	○쌍림면사무소 축소에 따른 중로3-11호선 일부구간 선형변경 및 도로위계 정비를 통한 체계적 관리	귀원지구
중로3-12	중로3-12	○노선신설 - B = 8~12m - L = 752m	○국도26호선의 개설현황 반영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한 노선신설	국도 26호선

나. 공간시설

1) 공원

< 대가야도시지역 >

구분	도 면 표시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	우륵공원	근린 및 사적공원	대가야읍 연조리 74	37,208	감) 1,768	35,440	건고제1971-587호 (71.09.30.)	
변경	2	산성공원	근린 및 사적공원	대가야읍 연조리 548	36,510	증) 7,309	43,819	건고제1971-587호 (71.09.30.)	
변경	3	지산공원	근린공원	대가야읍 지산리 산47일원	36,279	감) 589	35,690	건고제1971-587호 (71.09.30.)	
변경	4	고아공원	근린공원	대가야읍 고아리 산13-1	22,932	감) 516	22,416	경고제1996-85호 (96.07.10.)	

□ 변경사유서

도 면 표시번호	공원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1	우륵공원	○ 근린공원 축소 - A = 37,208㎡ → 35,440㎡ 감) 1,768㎡	○ 장기미집행 공원의 국·공유지 실효 유예에 따른 공원의 비정형화 및 불합리한 경계 조정
2	산성공원	○ 공원합병 및 선형변경 - 근린공원2, 어린이공원6 → 근린공원2 - A = 36,510㎡ → 43,819㎡ 증) 7,309㎡	○ 개설현황 및 사유재산 보호를 위한 사유지 제척 및 장기미집행 공원의 국·공유지 실효 유예에 따른 공원의 비정형화 및 불합리한 경계 조정
3	지산공원	○ 근린공원 축소 - A = 36,279㎡ → 35,690㎡ 감) 589㎡	○ 장기미집행 공원의 국·공유지 실효 유예에 따른 공원의 비정형화 및 불합리한 경계 조정
4	고아공원	○ 근린공원 축소 - A = 22,932㎡ → 22,416㎡ 감) 516㎡	○ 장기미집행 공원의 국·공유지 실효 유예에 따른 공원의 비정형화 및 불합리한 경계 조정

다. 공공·문화체육시설

1) 공공청사

< 비도시지역 >

구분	도 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	공공청사	보건소	덕곡면 예리 380	2,903	감) 260	2,643	고고제2012-396호 (12.06.07)	예리 지구
변경	2	공공청사	면사무소	덕곡면 예리 453	3,096	증) 273	3,369	고고제2012-396호 (12.06.07)	예리 지구
변경	2	공공청사	보건소	운수면 봉평리 601-4	1,794	증) 652	2,446	고고제2012-396호 (12.06.07)	봉평 지구
변경	2	공공청사	면사무소	우곡면 도진리 199	1,748	증) 272	2,020	경고제2012-187호 (12.07.02)	도진 지구
변경	1	공공청사	면사무소	쌍림면 귀원리 206-3	3,388	감) 453	2,935	고고제2012-396호 (12.06.07)	귀원 지구

□ 변경사유서

도 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1	공공청사	○ 공공청사(보건소) 축소 - A = 2,903㎡ → 2,643㎡ 감) 260㎡	○ 개설현황을 반영하여 덕곡보건지소 축소
2	공공청사	○ 공공청사(면사무소) 확장 - A = 3,096㎡ → 3,369㎡ 증) 273㎡	○ 개설현황을 반영하여 덕곡면사무소 확장
2	공공청사	○ 공공청사(보건소) 확장 - A = 1,794㎡ → 2,446㎡ 증) 652㎡	○ 개설현황 및 지적경계를 반영하여 운수 보건지소 확장
2	공공청사	○ 공공청사(면사무소) 확장 - A = 1,748㎡ → 2,020㎡ 증) 272㎡	○ 개설현황을 반영하여 우곡면사무소 확장
1	공공청사	○ 공공청사(면사무소) 축소 - A = 3,388㎡ → 2,935㎡ 감) 453㎡	○ 쌍림 상생교류센터 건립사업 계획을 반영한 쌍림면사무소 축소

라. 환경기초시설

1) 폐기물처리시설

<비도시지역>

구분	도 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2	환경 위생사업소	폐기물 처리시설	쌍림면 신곡리 767 일원	-	증) 38,296	38,296	경고제2015-138호 (15.04.23)	환경 위생사업소

변경사유서

도 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2	환경 위생사업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기물처리시설 신설 - A = 0㎡ → 38,296㎡ 증) 38,29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 개설되어 운영중인 환경위생사업소를 개설현황을 반영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신설

< 의안 소관 부서명 >

도 시 과	
연 락 처	054-950-6706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4. . . (제 회)	

고령군 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자	고령군수 (도시과장)
제출연월일	2024. . .

법무팀 심사필

고령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일자 : 2024. . .

제출자 : 고령군수

1. 개정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등 법령체계의 정합성을 제고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난개발 방지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군관리계획안 주민의견 청취 시 필요한 사항 개정(안 제7조, 제8조)

- 군관리계획안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 시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의 개정된 기준에 따라 군관리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공고토록 하고, 국토계획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재공고·열람에 대한 기준 정비

나.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유희토지·시설이전지의 면적 기준 마련(안 제15조제1항)

-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유희토지·시설이전지의 면적 기준을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3조제3항에서 5천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된 사항 반영

다.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대상 기반시설 규정 삭제(안 제15조의2)

-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대상 기반시설은 시·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으로 삭제

라.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기준 마련
(안 제16조의2)

-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3년) 및 공익 목적 또는 건본주택과 같은 가설건축물에 대한 존치기간 연장 횟수 예외 규정에 관한 기준 마련

마.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 심의 제외 대상 정비(안 제17조의2)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너목(제조업소, 수리점 등)의 시설에 대해 사업부지 5,000제곱미터 이상의 대규모 토지의 형질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 경관 및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난개발 방지 및 전문적인 입지 분석을 위해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개정
-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10(누적산정)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증축하려는 경우 및 심의 제외 대상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진입도로(연장 50미터 이하)를 군계획위원회 심의 제외 대상에 추가하는 등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7조 제1호의2다목에 부합하도록 개정사항 반영

바. 발전시설 설치 허가기준 개정(안 제20조의5제3항)

- 소규모 발전시설(발전시설 용량 100kW 이하)에 대해서도 발전시설 설치 입지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경관 및 정주환경을 보호할 수 있도록 소규모 발전시설 입지 관련 조항 삭제

사. 성장관리계획에 대한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경미한 변경 기준 추가(안 제25조의2, 별표 19)

-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기준 등 성장관리계획에 대한 인용 조항 및 용어 등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성장관리계획의 경미한 변경 기준 추가

아. 농림지역에 대한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건축제한 요건 완화
(안 제52조제2호)

-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전에 계획관리지역에 설치된 기존 공장을 인접한 용도지역으로 확장·설치하는 경우(3천제곱미터 이하) 기존 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에 농림지역을 추가하여 건축제한 요건 완화

자. 계획관리지역에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시 건폐율 완화
(안 제58조제2호)

- 계획관리지역에 공장이 체계적·계획적으로 입지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계획관리지역에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된 경우 건폐율을 60퍼센트까지 완화

차. 자연녹지지역 내 수소연료공급시설 증축 시 한시적으로 건폐율 완화(안 제58조의2제8호)

- 수소연료공급시설 확충을 위해 자연녹지지역 내 기존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부지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수소연료공급시설 증축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건폐율을 30퍼센트까지 완화

카.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 완화(안 제61조의4, 제62조제9항)

- 건폐율 : 계획관리지역 50퍼센트 이하, 자연녹지지역·생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 및 농림지역 30퍼센트 이하
- 용적률 : 계획관리지역 125퍼센트 이하

타.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완화 기준 개정(안 제62조제3항)

- 주거지역 내 임대주택 건설 촉진을 위하여 공공임대주택 또는 임대

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및 의료시설 부지 내 필요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의 120퍼센트까지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토록 하는 등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5조제3항 개정사항 반영

파. 기존 공장·제조업소의 건축물이 아닌 시설 증설 허용범위 규정 (안 제65조의2)

- 법령 개정 등으로 건축제한·건폐율·용적률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기존 공장이나 제조업소의 경우,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건축물이 아닌 시설을 증설할 수 있도록 조례로 정하는 사항 반영

하. 주거지역 내 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 설치 제한(안 별표 3, 별표 4, 별표 5, 별표 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 일반게임제공업의 허가기준과 일치시키기 위해 주거지역 내 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 설치 제한

거.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의 건축물 층수제한 폐지(안 별표 4)

-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한 층수제한 (15층 이하) 규정을 폐지하여 주택공급 활성화 도모

너. 준주거지역·상업지역 내 생활숙박시설 허용기준 정비·완화(안 별표 6, 별표 7, 별표 8, 별표 9, 별표 10)

- 준주거지역 내 생활숙박시설 허용기준을 주택 밀집지역으로부터의 거리로 산정하고, 준주거지역과 인접한 상업지역 내 생활숙박시설 허용기준을 준주거지역 경계가 아닌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 지역을 경계로 거리를 산정하도록 하는 등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사항 및 조례로 위임된 사항 반영

- 더. 전용공업지역 내 교육연구시설 중 기술계학원 설치 허용(안 별표 11)
- 러. 일반공업지역 내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는 지원시설에 한하여 일반업무시설 설치 허용(안 별표 12)
- 머. 보전녹지지역·생산녹지지역·보전관리지역 및 생산관리지역 내 초중고교 졸업학력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의 설치 허용(안 별표 14, 별표 15, 별표 17, 별표 18)
- 버. 보전녹지지역·보전관리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내 공공하수처리 시설 설치 허용(안 별표 14, 별표 17, 별표 21)
- 서. 생산녹지지역 내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연구소 설치 허용(안 별표 15)
- 어. 생산관리지역 중 일정지역에 휴게음식점 설치 허용(안 별표 18)
 - 생산관리지역 내 상수원보호구역이나 하천 등으로부터 이격되어 환경 훼손 우려가 적은 지역에 대해서는 휴게음식점의 입지 허용으로 일자리 및 주민소득 창출
- 저. 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내 농기계수리시설 설치 허용(안 별표 18, 별표 20)
- 처. 계획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에 대한 규제 완화(안 제31조, 별표 19, 별표 24)
 - 「하천법」에 따른 국가하천·지방하천(조례로 정하는 지방하천은 제외한다)의 양안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에서는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없는 규정에 대해 낙후지역의 발전을 위해 지방하천의 경우 구(舊)지방1급 하천에 한해 적용되도록 조례로 위임된 사항 반영

커. 그 밖에 관계법령의 개정사항 반영 및 일부 형식상 미비한 사항에 대한 정비(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15조, 제17조, 제17조의3,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0조의2, 제20조의3, 제20조의4, 제21조, 제22조, 제24조, 제30조, 제31조, 제58조의2, 제58조의3, 제58조의6, 제59조, 제61조, 제61조의3, 제62조, 제63조, 제64조, 제65조, 제65조의3, 제66조, 제72조, 제73조, 제76조, 제78조, 제80조, 제82조, 별표 1 ~ 별표 23)

3. 개정안 : 붙임과 같음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과 같음

5.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입법예고 기간 및 결과 : 2024. 7. 18. ~ 2024. 8. 7. (특이사항 없음)

라. 성별 영향평가 결과 : 특이사항 없음

마. 규제영향 분석 결과 : 원안통과

바. 기타 관련사항 : 해당없음

고령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령군 군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을 “,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2조 중 “관리는 법 제3조”를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로 한다.

제3조 중 “법 제2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을 “법 제22조의2에 따라 경상북도지사의 승인을 받”으로, “군수”를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을 “(추진기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8조에 따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를 “군수”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26조에 따라”로, “대하여”를 “대하여 다음”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군관리계획입안”을 “군관리계획 입안”으로 한다.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군수는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의 기준에 따라 군관리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공고하고, 14일 이상의 기간 동안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8조제1항 중 “영 제22조제5항에 의하여 군수는 제출된 의견을 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를 “법 제28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로, “아니 하는 때”를 “않는 경우”로 한다.

제1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43조제4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43조제4항제8호에 따라”로 한다.

- ① 영 제43조제3항에 따라 유희토지 또는 대규모 시설의 이전부지로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면적은 5천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제15조의2를 삭제한다.

제3장제3절에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① 영 제50조의2제1호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연장된 존치기간을 포함한 총 존치기간을 말한다)은 3년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50조의2제1호가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의 경우에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횟수만큼 존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군이 공익 목적으로 건축하는 가설건축물: 제한없음
2.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4호에 따른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가설건축물: 횟수별 3년의 범위에서 3회까지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53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다목 중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 (비닐하우스)”를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양식업을 하기 위하여 비닐하우스”로, “육상 어류양식장을제외한다”를 “양식장은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호가목 중 “토지 에서”를 “토지에서”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지구단위계획 외”를 “지구단위계획구역외”로 하며, 같은 조 제5호나목 중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를 “국유지 또는 공유지로 하거나 공공시설로 사용하기”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용도 폐지되는”을 “용도폐지되는”으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지형도면 고시”를 “지형도면고시”로 하고, 같은 호 마목 중 “5m이하”를 “5미터 이하”로, “토지의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 면적”을 “토지의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면적”으로 한다.

제17조의2의 제목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 심의 제외)”로 한다.

제17조의2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중전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57조제1항1의2 “다”목에 따라 군계획위원회”를 “영 제57조제1항제1호의2다목에 따라 군계획위원회의”로,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을 각각 “「건축법 시행령」 별표 1”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거목·더목”을 “거목·너목·더목”으로, “제외한다”를 “제외한다. 다만, 같은 호 너목의 시설은 사업부지 5,000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및 제6호 중 “(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을 각각 “(1,50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호 중 “제18호 가 목”을 “제18호가목”으로, “건축물로 한정한다)와 같은 표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다목 및 라목은 제외하고,”를 “경우로서”로,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를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같은 호 다목·라목의 시설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로서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0.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10(여러 차례에 걸쳐 증축하는 경우에는 누적하여 산정한다)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진입도로(도로 연장이 5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7조의3제1항 중 “영 제57조 제1항 1의2“라” 목”을 “영 제57조제1항제1호의2라목”으로, “토지로 부터”를 “토지로부터”로, “별표 23와 같다”를 “별표 23과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상수도&·하수도”를 “상수도·하수도”로, “군관리계획으로”를 “군관리계획을”로 한다.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5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57조제4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우려가 있을”을 “있을”로 한다.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를 “단서에 따라”로, “농림 지역”을 “농림지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3만 제곱미터”를 각각 “3만제곱미터”로 한다.

제20조제1항제3호 단서의 후단 중 “「농어촌도로정비법」”을 “「농어촌도로정비법」”으로 한다.

제20조의2제5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로 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제20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3”을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으로 한다.

제20조의4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20조의5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농업관련”을 “농축산업 관련”으로 한다.

제21조의 제목 “(도로 등이 미 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을 “(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2)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상수도”를 “(2)에 따라 도로·상수도”로, “아니한”을 “않은”으로,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일반도로 (폭)”을 “일반도로(폭)”으로, “로 부터”를 “로부터”로 한다.

제21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개발규모가 5천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진입도로 6미터 이상, 개발규모가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8미터 이상의 진입도로를 확보하여야 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단, 부지면적은 연접하여 개발하는 면적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제21조제1호라목 중 “신축또는”을 “신축 또는”으로 하고, 같은 호 마목 중 “미만의”를 “미만인”으로, “2.5m이상”을 “2.5미터 이상”으로, “이상은 3m이상의 진입도로를 확보하여야 한다.”를 “이상인 경우 3미터 이상의 진입도로를 확보해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1호의2 중 “설치 할”을 “설치할”로,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보존관리지역”을 “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위 1호”를 “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한다.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2)의 규정에 의하여”를 “(2)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아니하도록 용벽·석축·떼붙임”을 “않도록 용벽·석축·떼붙임”으로, “아니하도록 안전하게”를 “않도록 안전하게”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을”을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를”로, “「산지관리법」의 규정”을 “「산지관리법」”

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아니하도록”을 “않도록”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멧쌓기”를 “메쌓기”로, “밑”을 “밋”으로, “뒷채움”을 “뒤채움”으로 한다.

제24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종전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의 규정에 의하여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인”을 “(1)에 따라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인”으로, “아니하고”를 “않고”로, “분할제한 면적”을 “분할제한면적”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인·허가를 득하지 않고 분할을 하는”을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않고 토지를 분할하는”으로, “아닐 것.”을 “아닐 것”으로 한다.

제25조의2의 제목 “(성장관리방안의 내용 등)”을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기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56조의2제1항제4호”를 “영 제70조의12제3호”로, “성장관리방안을 수립”을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난개발 방지를 위해 성장관리방안의 수립이”를 “수립권자가 난개발 방지와 체계적인 관리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56조의2제2항제5호”를 “영 제70조의14제1항제2호”로, “성장관리방안”을 “성장관리계획”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영 제70조의14제3항제4호에 따른 경미한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에 따라 등록 전환이나 분할에 따른 면적을 정할 때 발생하는 오차를 처리하기 위한 변경
2. 면적산정의 착오 등을 정정하기 위한 변경
3. 해당 성장관리계획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결정된 사항의 변경

제30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영 제59조제2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예산내역서상의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 및 조경에 필요한 비용의 범위안에서 산정하되 총공사비의 20퍼센트 이내가 되도록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지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산지관리법」 제38조에 따른 복구비를 포함하여 정하되, 복구비가 이행보증금에 중복하여 계상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31조의 제목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을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78조제1항, 제79조(개발진흥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및 영 부칙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78조제1항에 따라”로, “자연취락지구안”을 “자연취락지구안에서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별표 2과”를 “별표 2와”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별표 4과”를 “별표 4와”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별표 5과”를 “별표 5와”로 하고, 같은 조 제23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2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4. 계획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 : 별표 24와 같다.

제5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79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하고”를 “영 제79조제3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 또는 보전관리지역:”을 “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으로,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단서 중 “도시계획위원회”를 “군계획위원회”로 한다.

제5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8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를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이하(집단취락지구)”를 “이하(집단취락지구)”로, “의한다.”를 “의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호가목 중 “이하”를 “이하. 다만, 계획관리지역에 영 제31조제2항제8호 나목에 따른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된 경우에는 60퍼센트 이하로 한다.”로 한다.

제58조의2제1호 중 “건축물 중 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를 “군계획위원회”로, “인정되거나, 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기반시설 확보 요건을 충족하는”을 “인정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30퍼센트의”를 “30퍼센트”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이 조 제4항제6호”를 “영 제84조제4항제6호”로 하고, 같은 조 제7호나목 중 “해당 도시계획위원회”를 “군계획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및

국가등록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등

8. 자연녹지지역의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가. 2021년 7월 13일 전에 준공되었을 것

나.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증축이 예정되어 있을 것

1) 기존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부지에 증축할 것

2)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증축 허가를 신청할 것

제58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연녹지 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을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군계획시설”로 한다.

제58조의6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영 제84조의2제2항”을 “영 제84조의2제4항”으로, “(2018년 12월 31일까지 증축허가를 신청한”을 “(해당 용도지역으로 변경지정된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증축허가를 신청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나목 중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를 “거쳐 기반시설이 충분히 설치되어 있거나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용지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고,”로 하며, 같은 조 제2호다목 단서 중 “아니할”을 “않을”로 한다.

제59조의 제목 “(건폐율의 강화)”를 “(건폐율의 강화)”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영 제8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84조제5항에 따라”로, “낮추어야”를 “낮춰야”로 한다.

제61조의 제목 “(「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를 “(「농지법」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영 제8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84조제7항에 따라”로,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를 “자연환경보전지역에”로, “농업진흥구역에서 허용되는”을 “건축할 수 있는”으로 한다.

제61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84조제8항 규정에 의하여 영 제84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77조제4항제3호”를 “영 제84조제8항”으로, “생산녹지지역안”을 “생산녹지지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를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농지법 시행령」 제29

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우리군”을 “「농지법 시행령」 제29조 제7항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고령군”으로 한다.

1. 「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고령군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만 해당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연구시설

제61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1조의4(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완화) 법 제75조의3제2항에 따라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는 제57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폐율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계획관리지역: 50퍼센트 이하
2. 자연녹지지역·생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 및 농림지역: 30퍼센트 이하

제6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영 제85조제3항에 따라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용적률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완화할 수 있다.

제62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건설하는 기숙사(「건축법 시행령」”을 “「건축법 시행령」”으로, “기숙사를 말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을 “기숙사(이하 이 항에서 “기숙사”라 한다)를 건설하는 경우: 영 제85조제1항”으로, “최대한도까지 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를 “최대한도”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임대 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영 제85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120퍼센트 이하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 이용하도록 해당 학교 부지에 기숙사를 건설하는 경우: 영 제8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
4. 「영유아보육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사업주가 같은 법 제10조제4호의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기 위하여 기존 건축물 외에 별도의 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 영 제8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

5. 영 제85조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설하는 경우: 영 제8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부지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3항 전단에 따른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영 제85조제3항제6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영 제8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120퍼센트 이하

제62조제5항제3호 중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1항”을 “영 제85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120퍼센트

⑨ 법 제75조의3제3항에 따라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계획관리지역에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125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6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8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호”를 “영 제85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도시지역 외”를 “도시지역외”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의한”을 “다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제2조제8호 라 목의 규정에 의한”을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으로, “한 한다”를 “한한다”로 한다.

제6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8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을 “영 제85조제7항에 따라 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으로, “제1항”을 “제62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건축물이”를 “건축물이나”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1천 제곱미터”를 “1천제곱미터”로 한다.

제6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85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를 “영 제85조제8항에 따라 다음 각 호”로, “경우”를 “경우에는”으로, “제공 비율에 따라 제1항 각호”를 “제공비율에 따라 제62조제1항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따른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으로 한다.

제65조의2의 제목 “(기존 건축물의 업종변경 특례 규정)”을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영 제93조제4항에 따라 기존의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영 제93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영 제71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부터 제84조까지, 제84조의 2, 제85조부터 제89조까지 및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건축제한·건폐율 또는 용적률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건축물이 아닌 시설을 증설할 수 있다.

② 영 제93조제6항에 따라 기존의 건축물이 공장이나 제조업소인 경우에는 대기오염물질발생량 또는 폐수배출량이 증가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기존 용도 범위에서의 업종변경을 할 수 있다.

제65조의3의 제목 “(등록문화유산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을 “(국가등록문화유산의 건폐율과 용적률에 관한 특례)”로 한다.

제65조의3제목 외의 부분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국가등록문화유산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의 건폐율과 용적률은 법 제77조부터 제79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용도지역 등에 적용되는 건폐율 및 용적률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66조제2호 중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한”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되거나 재위임된”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부의한”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

3. 군수가 입안한 군계획안에 대한 자문

제72조제3항 및 제4항 중 “도시관리계획안”을 각각 “군관리계획안”으로 한다.

제7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113조의3제1항에 따라 회의록은 심의 종결 6개월이 지난 후에는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공개하여야 한다.

제73조제2항제1호 중 “해할”을 “해칠”로 한다.

제76조제4항 중 “「지방공무원임용령」”을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한다.

제78조제1항 중 “「지방공무원임용령」 및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 시행규칙」”을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으로 한다.

제80조제1항 중 “법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30조제3항 및 제7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82조 중 “운영, 간사 및 서기, 자료제출, 회의의 비공개, 회의록, 수당 및 여비지급”을 “운영”으로, “제68조 및 제69조, 제71조 부터”를 “제68조부터 제69조의4까지, 제71조부터”로 한다.

별표 1부터 별표 23까지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4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
·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개발행위허가(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허가·인가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신청된 경우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공사 또는 사업을 시행 중인 경우에는 해당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따른다.

제3조(발전시설 설치 허가기준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전기사업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제20조의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1】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1호 관련)

1. 영 별표 2 제1호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부터 바목까지 및 사목(공중화장실·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및 지역아동센터는 제외한다)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2. 영 별표 2 제2호에 따라 **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별표 2】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2호 관련)

1. 영 별표 3 제1호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2. 영 별표 3 제2호에 따라 **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별표 3】 <일부개정 2020.05.27.>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3호 관련)

1. 영 별표 4 제1호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단지형 연립주택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단지형 다세대주택인 경우에는 5층 이하를 말하며, 단지형 연립주택의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단지형 다세대주택의 1층 바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층수에서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건축물만 해당한다]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2. 영 별표 4 제2호에 따라 **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관람장을 제외한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고려하여**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제1호 라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옥외 철타미 설치된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
 -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인쇄업, 기록매체복제업, 봉제업(의류편조업을 포함한다), 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 컴퓨터 관련 전자제품조립업, 두부제조업, 세탁업의 공장 및 지식산업센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3)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다만, 동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5)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6) 「소음·진동관리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떡 제조업 및 빵 제조업(이에 딸린 과자 제조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공장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것

(1)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일 것

(2) 「악취방지법」에 따른 악취배출시설인 경우에는 악취방지사설 등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을 것

(3) 차목(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근의 주거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이 적다고 인정하였을 것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4】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4호 관련)

1. 영 별표 5 제1호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2. 영 별표 5 제2호에 따라 **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고려하여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제1호 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금융업소·사무소 및 같은 호 가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자. 영 별표 4 제2호차목 및 카목의 공장

-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같은 호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주차장 및 세차장
-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같은 호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및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식물과 관련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
-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5】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5호 관련)

1. 영 별표 6 제1호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2. 영 별표 6 제2호에 따라 **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고려하여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제1호 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하인 것
 - 자. 영 별표 4 제2호차목 및 카목의 공장
 -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같은 호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주차장 및 세차장
 -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같은 호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및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식물과 관련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
 -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군사시설
 -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 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 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1조제6호 관련)

1. 영 별표 7 제1호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같은 호 다목의 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생활숙박시설로서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택 밀집지역과 차단되거나 주택 밀집지역으로부터 10미터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영 별표 4 제2호차목(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저장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수소연료공급시설은 제외한다)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폐차장
-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같은 호 가목·다목 및 라목에 따른 시설과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같은 호 가목·다목 또는 라목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
-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2. 영 별표 7 제2호에 따라 준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영 별표 4 제2호차목에 해당하는 것과 떡류 제조업, 빵류 제조업, 과자류 제조업, 얼음제조업, 설탕제조업, 탁주제조업, 천막제조업, 절연코드제조업, 전기회로개폐제조업, 문구용 종이제품제조업, 모자제조업은 제외한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가축시설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중 같은 호 라목부터 바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별표 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1조제7호 관련)

1. 영 별표 8 제1호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다른 용도와 복합된 것은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1)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것

(2)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의 소형 주택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다만, 다음의 일반숙박시설 또는 생활숙박시설은 제외한다.

(1)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전용주거지역으로부터 100미터,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20미터, 준주거지역으로부터 10미터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 밖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

(2)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으로부터 10미터, 전용주거지역으로부터 100미터,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20미터 거리 밖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전용주거지역으로부터 100미터,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20미터, 준주거지역으로부터 10미터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제2호바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저장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수소연료공급시설은 제외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폐차장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2. 영 별표 8 제2호에 따라 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다른 용도와 복합된 것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제1호나목(1)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같은 호 가목은 제외한다)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출판업·인쇄업·금은세공업 및 기록매체복제업의 공장으로서 영 별표 4 제2호차목(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제1호바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및 라목부터 아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1조제8호 관련)

1. 영 별표 9 제1호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다만, 다음의 일반숙박시설 또는 생활숙박시설은 제외한다.

(1)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전용주거지역으로부터 100미터,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20미터, 준주거지역으로부터 10미터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 밖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

(2)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으로부터 10미터, 전용주거지역으로부터 100미터,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20미터 거리 밖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전용주거지역으로부터 100미터,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20미터, 준주거지역으로부터 10미터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2호차목(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저장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수소연료공급시설은 제외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폐차장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같은 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따른 시설 및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동물과 관련된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2. 영 별표 9 제2호에 따라 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별표 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1조제9호 관련)

1. 영 별표 10 제1호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다만, 다음의 일반숙박시설 또는 생활숙박시설은 제외한다.

(1)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전용주거지역으로부터 100미터,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20미터, 준주거지역으로부터 10미터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 밖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

(2)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으로부터 10미터, 전용주거지역으로부터 100미터,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20미터 거리 밖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전용주거지역으로부터 100미터,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20미터, 준주거지역으로부터 10미터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2호차목(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저장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수소연료공급시설은 제외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같은 호 다목부터 사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같은 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따른 시설 및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동물과 관련된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2. 영 별표 10 제2호에 따라 근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제1호마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같은 호 아목에 해당하는 것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같은 호 마목 및 바목에 따른 시설 및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같은 호 마목 및 바목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군사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별표 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1조제10호 관련)

1. 영 별표 11 제1호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다만, 다음의 일반숙박시설 또는 생활숙박시설은 제외한다.

(1)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전용주거지역으로부터 100미터,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20미터, 준주거지역으로부터 10미터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 밖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

(2)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으로부터 10미터, 전용주거지역으로부터 100미터,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20미터 거리 밖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전용주거지역으로부터 100미터,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20미터, 준주거지역으로부터 10미터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저장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수소연료공급시설은 제외한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2. 영 별표 11 제2호에 따라 근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전시장은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폐차장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군사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별표 11】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11호 관련)

1. 영 별표 12 제1호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자목·타목(기원만 해당한다)·더목 및 러목은 제외한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 영 별표 12 제2호에 따라 **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아목·자목·타목(기원만 해당한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산업전시장 및 박람회장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해당전용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직업훈련소(「**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과 그 밖에 동법 제3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에 **한한다**)·**학원(기술계학원에 한한다)** 및 연구소(공업에 관련된 연구소, 「고등교육법」에 따른 기술대학에 부설되는 것과 공장대지 안에 부설되는 것에 한한다)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군사시설**
-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별표 12】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12호 관련)

1. 영 별표 13 제1호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해당일반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한다)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 영 별표 13 제2호에 따라 관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라목에 해당하는 것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일반업무시설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는 지원시설에 한정한다)
-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별표 13】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1조제13호 관련)

1. 영 별표 14 제1호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2. 영 별표 14 제2호에 따라 준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같은 호 다목·라목·사목 및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같은 호 다목·라목·사목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은 제외)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군사시설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별표 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14호 관련)

1. 영 별표 15 제1호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졸업 시 초등학교 졸업학력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를 포함한다)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한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군사시설
2. 영 별표 15 제2호에 따라 균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가목, 사목, 아목에 해당되는 것으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중 하수 등 처리시설(「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만 해당한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15】 <일부개정 2020.05.27.>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15호 관련)

1. 영 별표 16 제1호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초등학교(졸업 시 초등학교 졸업학력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를 포함한다)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운동장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한다)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같은 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시설과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동물과 관련된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은 제외한다)
 -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군사시설
 -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2. 영 별표 16 제2호에 따라 준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단란주점을 제외한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중학교·고등학교(졸업 시 중학교·고등학교 졸업학력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를 포함한다)·교육원(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로 한정한다)·직업훈련소 및 연구소(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연구소로 한정한다)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운동장을 제외한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식품공장·제1차산업생산품 가공공장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제2호마목의 첨단업종의 공장(이하 "첨단업종의 공장"이라 한다)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3)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다만, 동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 해당하는 것

(5)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으로 쓰는 것은 제외한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같은 호 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같은 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시설과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동물과 관련된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

【별표 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16호 관련)

1. 영 별표 17 제1호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더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은 제외한다]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을 제외한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직업훈련소 및 학원을 제외한다)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한다)
 -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군사시설
 -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 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 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 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2. 영 별표 17 제2호에 따라 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아목 및 자목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1)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 (2)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농업인·어업인 및 생산자단체,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후계농어업경영인,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전업농어업인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에 한한다)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형할인점 및 중소 기업공동판매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직업훈련소 및 학원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첨단업종의 공장, 지식산업센터,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영 별표 16 제2호 아목(1) 내지 (5)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 및 군 지역 내에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공장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으로 쓰는 것은 제외한다) 및 같은 호 라목의 집배송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별표 17】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17호 관련)

1. 영 별표 18 제1호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졸업 시 초등학교 졸업학력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를 포함한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군사시설
2. 영 별표 18 제2호에 따라 관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을 제외한다)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너목 및 더목은 제외한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중학교·고등학교(졸업 시 중학교·고등학교 졸업학력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를 포함한다)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한다)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같은 호 가목,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동물 또는 식물과 관련된 가목 및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
 -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중 하수 등 처리시설(「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만 해당한다)
 -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18】 <일부개정 2020.05.27.>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18호 관련)

1. 영 별표 19 제1호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만 해당한다) 및 아목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졸업 시 초등학교 졸업학력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를 포함한다)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운동장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한다)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같은 호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및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식물과 관련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군사시설
 -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 영 별표 19 제2호에 따라 관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나목(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은 제외한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너목(농기계수리시설은 제외한다) 및 더목은 제외한다]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중학교·고등학교(졸업 시 중학교·고등학교 졸업학력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를 포함한다) 및 교육원[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나목 및 다목에도 불구하고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등이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지구 내에서 교육시설과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한정한다]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같은 표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를 포함한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영 별표 16 제2호아목(1)부터 (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

(1) 도정공장

(2) 식품공장

(3)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같은 호 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같은 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및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동물과 관련된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19】 <일부개정 2020.05.27.>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1조제19호 관련)

1. 영 별표 20 제1호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4층을 초과하는 모든 건축물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아목의 시설 및 같은 호 자목의 일반음식점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너목의 시설로서 성장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지역에 설치하는 것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더목의 단관주점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성장관리계획 또는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설치하는 판매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성장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지역에 설치하는 것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성장관리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 공장과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또는 「악취방지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 아닌 공장은 제외한다.

(1) 영 별표 16 제2호아목(1)부터 (4)까지에 해당하는 것. 다만, 인쇄·출판시설이나 사진처리 시설로서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라 배출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화학제품시설(석유정제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폐수를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전량 유입하여 처리하거나 전량 재이용 또는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물, 용제류 등 액체성 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제품의 성분이 용해·용출되는 공정이 없는 고체성 화학제품 제조시설

(나) 「화장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유기농화장품 제조시설

(다) 「농약관리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천연식물보호제 제조시설
 (라)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유기농어업자재 제조시설
 (마) 동·식물 등 생물을 기원(起源)으로 하는 산물(이하 "천연물"이라 한다)에서 추출된 재료를 사용하는 다음의 시설[「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 시설 중 반응시설, 정제시설(분리·증류·추출·여과 시설을 포함한다), 용융·용해시설, 농축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로서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폐수의 1일 최대 배출량이 20세제곱미터 이하인 제조시설로 한정한다]

1) 비누 및 세제 제조시설

2) 공중위생용 해충 구제제 제조시설(밀폐된 단순 혼합공정만 있는 제조시설로서 관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근의 주거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인정하는 시설로 한정한다)

- (3) 제1차금속, 가공금속제품 및 기계장비 제조시설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폐유기용제류를 발생시키는 것
- (4) 가죽 및 모피를 물 또는 화학약품을 사용하여 저장하거나 가공하는 것
- (5) 섬유제조시설 중 감량·정련·표백 및 염색 시설. 다만,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염색시설은 제외한다.

(가) 천연물에서 추출되는 염료만을 사용할 것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중 표백시설, 정련시설이 없는 경우로서 금속성 매염제를 사용하지 않을 것

(다)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폐수의 1일 최대 배출량이 20세제곱미터 이하일 것

(라) 폐수를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전량 유입하여 처리하거나 전량 재이용 또는 전량 위탁처리할 것

- (6)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외의 지역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외의 지역의 사업장 중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장.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중간·최종·종합재활용업으로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미만으로 배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7)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에 설치되는 부지면적(둘 이상의 공장을 함께 건축하거나 기존 공장부지에 접하여 건축하는 경우와 둘 이상의 부지가 너비 8미터 미만의 도로에 서로 접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1만제곱미터 미만의 것. 다만,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을 정하여 공장의 건축이 가능한 지역으로 고시한 지역 안에 입지하는 경우나 자연보전권역 또는 특별대책지역에 준공되어 운영 중인 공장 또는 제조업소는 제외한다.

2. 영 별표 20 제2호에 따라 관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별표 20】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20호 관련)

1. 영 별표 21 제1호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으로서 현저한 자연훼손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건축하는 농어가주택(「농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농업인 주택 및 어업인 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만 해당한다) 및 아목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한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같은 호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및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식물과 관련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 영 별표 21 제2호에 따라 관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나목은 제외한다]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너목(농기계수리시설은 제외한다), 더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은 제외한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 마목에 해당하는 것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같은 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및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동물과 관련된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
-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군사시설
-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비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5항제3호에 따라 농림지역 중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또는 초지인 경우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하여는 각각 「농지법」, 「산지관리법」 또는 「초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표 21】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21호 관련)

1. 영 별표 22 제1호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으로서 현저한 자연훼손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건축하는 농어가주택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2. 영 별표 22 제2호에 따라 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국도, 지방도, 지방하천, 도시공원, 자연공원과 300미터 이상 떨어져 있어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고, 정화시설 등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갖춘 것에 한한다)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가목, 바목, 사목(지역아동센터는 제외한다)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으로서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로서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같은 호 가목에 따른 시설 중 양어시설(양식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같은 호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양어시설과 비슷한 것 및 같은 목 중 식물과 관련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중 하수 등 처리시설(「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만 해당한다)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중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것

【별표 22】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22호 관련)

1. 영 별표 23 제1호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너목, 더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은 제외한다]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한다)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군사시설
 -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 영 별표 23 제2호에 따라 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아목·자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1)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 (2)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어업인,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후계농어업경영인,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전업농어업인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에 한한다)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 및 첨단업종의 공장으로서 영 별표 16 제2호아목(1)부터 (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건축물의 집단화 유도지역 설치기준(제17조의3 관련)

용도지역	건축물의 용도	거리	기존 개발행위 전체 면적	기반시설 등 기타
1. 계획관리지역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40m 이내	35,000㎡ 이상	가. 건축물 집입도로 너비 : 4m이상 나. 기타 개발행위허가 기준 및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에 의함.
2.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 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50m 이내	35,000㎡ 이상	가. 건축물 집입도로 너비 : 4m이상 나. 기타 개발행위허가 기준 및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에 의함.

비고

1.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물의 용도는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공장, 창고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한한다.
2. 거리 산정 시 도로의 너비는 제외한다.

【별표 24】

계획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제31조제24호 관련)

규칙 별표 2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다만,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 하수처리시설이 설치·운영되거나 다음 각 호의 지역 내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은 제외한다.

1.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계획홍수위선이 없는 경우에는 상시만수위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2.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2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兩岸: 양쪽 기슭)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3. 제2호의 하천으로 유입되는 지천(제1지류인 하천을 말하며,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에서 유입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지천의 양안 중 해당 지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4.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5.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6. 유효저수량이 3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농업용저수지의 계획홍수위선의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7. 「하천법」에 따른 국가하천·지방하천(회천의 경우에 한한다)의 양안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가 1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하천법」 제10조에 따른 연안구역을 제외한다)

주

- 1) "집수구역"이란 빗물이 상수원·하천·저수지 등으로 흘러드는 지역으로서 주변의 능선을 잇는 선으로 둘러싸인 구역을 말한다.
- 2) "유하거리"란 하천·호소 또는 이에 준하는 수역의 중심선을 따라 물이 흘러가는 방향으로 잦 거리를 말한다.
- 3) "제1지류"란 본천으로 직접 유입되는 지천을 말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u>같은법 시행령</u> (이하 “영”이라 한다), <u>같은법 시행규칙</u>(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u>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u> ----- ----- ----- ----- ----- ----- -----.</p>
<p>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고령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u>관리는 법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u></p>	<p>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 ----- <u>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u>----- ----- ----- -----.</p>
<p>제3조(군기본계획의 위상) <u>법 제2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군기본계획은 관할구역 안에서 군수가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u></p>	<p>제3조(군기본계획의 위상) <u>법 제22조의2에 따라 경상북도지사의 승인을 받</u>----- ----- ----- <u>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u>----- -----.</p>
<p>제4조(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① <u>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u> 군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p> <p>② (생략)</p>	<p>제4조(추진기구 등) ① <u>법 제18조에 따라</u> ----- ----- ----- -----.</p> <p>② (현행과 같음)</p>

제5조(군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①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또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 ④ (생략)

제6조(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① 군수는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이 제안한 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첨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 4. (생략)

5. 그 밖에 군관리계획입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제7조(주민의견 청취) ① 법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영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열람기간 동안 군청 또는 읍·면사무소의 게시판과 군홈페이지를 통하여 군관리계획 입안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재공고·열람사항) ① 영 제22조제5항에 의하여 군수는 제출된 의견을 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2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다

제5조(군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① 군수-----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6조(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① ----- 법 제26조에 따라 -----

대하여 다음 -----

1. ~ 4. (현행과 같음)

5. ----- 군관리계획 입안-----

제7조(주민의견 청취) ①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군수는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의 기준에 따라 군관리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공고하고, 14일 이상의 기간 동안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8조(재공고·열람사항) ① 법 제28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

않는 경우-----

시 공고·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생략)

제15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지정대상) <신설>

군수는 영 제43조제4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삭제
2. ~ 7. (생략)

제15조의2(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대상 기반시설) 영 제46조제1항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기반시설” 이라 함은 영 제2조제1항 각 호 중 주차장, 공공청사, 문화시설,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을 말한다.

<신설>

-----.

② (현행과 같음)

제15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지정대상) ① 영 제43조 제3항에 따라 유희토지 또는 대규모 시설의 이전부지로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면적은 5천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② -- 영 제43조제4항제8호에 따라 -----

-----.

2. ~ 7. (현행과 같음)

<삭제>

제16조의2(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① 영 제50조의2제1호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연장된 존치기

제17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영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 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2. 공작물의 설치
 - 가.·나. (생략)
 - 다.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 (비닐하우스 안에 설치하는 육상 어류양식장을제외한다)의 설치

3. (생략)

간을 포함한 총 존치기간을 말한다)은 3년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50조의2제1호가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의 경우에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횟수만큼 존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군이 공익 목적으로 건축하는 가설건축물: 제한 없음
2.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4호에 따른 전시를 위한 건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가설건축물: 횟수별 3년의 범위에서 3회까지

제17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영 제53조에 따라 -----

1. (현행과 같음)
2. -----
 - 가.·나. (현행과 같음)
 - 다. -----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양식업을 하기 위하여 비닐하우스 --- 양식장은 제외한다-----

3. (현행과 같음)

4. 토석채취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25
제곱미터 이하인 토지 에서
의 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
의 토석채취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
지역 및 지구단위계획 외의
지역에서 채취면적이 250제
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
의 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5. 토지분할

가. (생략)

나.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토
지의 분할

다. 행정재산 중 용도 폐지되
는 부분의 분할 또는 일반재
산을 매각·교환 또는 양여
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

라. 토지의 일부가 군계획시
설로 지형도면 고시가 된 해
당 토지의 분할

마. 너비 5m이하로 이미 분할
된 토지의 「건축법」 제57조
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 면적
이상으로의 분할

6. (생략)

제17조의2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

4. -----

가. -----

----- 토지에서 -----

나. -----
----- 지구단위계획구역외 -----

5. -----

가. (현행과 같음)

나. ----- 국유지 또
는 공유지로 하거나 공공시
설로 사용하기 -----

다. ----- 용도폐지되는

라. -----
--- 지형도면고시 -----

마. -- 5미터 이하 -----
- 토지의 「건축법」 제57조
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6. (현행과 같음)

제17조의2(개발행위에 대한 군계

획위원회 심의 등) ① 영 제57조제1항1의2 “다”목에 따라 군 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너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가목의 아동 관련 시설(부

획위원회 심의 제외) 영 제57조제1항제1호의2다목에 따라 군 계획위원회의 ----- 않는 -----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
-- 거목·너목·더목 -----
--- 제외한다. 다만, 같은 호 너목의 시설은 사업부지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5. -----

-(1,50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은-----

6. -----

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 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 (생략)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18호 가 목의 창고(농업·임업·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와 같은 표 제2 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다목 및 라목은 제외하고,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 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

9. 기존부지면적의 100분의 5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신설>

<신설>

-(1,50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

7. (현행과 같음)

8. ----- 제1 8호가목 ----- 경 우로서 ----- 설 치하 는 경 우는 제 외 한다 -----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같은 호 다목·라목의 시설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로서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 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0.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10(여러 차례에 걸쳐 증축하는 경우에는 누적하여 산정한다)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

제17조의3 (건축물의 집단화 유도 등) ① 영 제57조 제1항 1의2 “라” 목에 따른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기 위한 용도지역, 건축물의 용도, 개발행위가 완료되었거나 진행중이거나 예정된 토지로 부터의 거리, 기존 개발행위의 전체 면적 및 기반시설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23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도로 및 상수도&·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거나 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한 군관리계획으로 미리 결정할 수 있다.

제18조(조건부 허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5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2. (생략)
3.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의 필요가 우려가 있을 때
4. ~ 6. (생략)

제19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로 설치하는 진입도로(도로 연장이 5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7조의3(건축물의 집단화 유도 등) ① 영 제57조제1항제1호의2 라목

토지로부터

별표 23과 같다.

② 상수도·하수도
군관리계획을

제18조(조건부 허가)

법 제57조제4항에 따라

1. 2. (현행과 같음)

3. 있을

4. ~ 6. (현행과 같음)

제19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

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4. (생략)

5. “발전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생략)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5호의 발전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발전시설 용도로 쓰이는 건축물

6. (생략)

제20조의3(폐차장, 자원순환 관련 시설 입지 허가기준) ①·② (생략)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원순환 관련 업종 및 시설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3에 따른 폐기물 소각시설 및 매립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1. ~ 5. (생략)

④ (생략)

제20조의4(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허가기준) ① (생략)

제20조의5(발전시설 설치 허가기준) ①·② (생략)

③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도 불구하고 발전시설 용량 100kw

-----.

1. ~ 4. (현행과 같음)

5. -----

-----.

가. (현행과 같음)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5호의 발전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

6. (현행과 같음)

제20조의3(폐차장, 자원순환 관련 시설 입지 허가기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3-----

-----.

1. ~ 5.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제20조의4(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허가기준) (현행 제1항과 같음)

제20조의5(발전시설 설치 허가기준) ①·② (현행과 같음)

<삭제>

이하 발전시설은 주변 토지 이용현황과 경관을 고려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④ 건축법에 의거 적법하게 건축된 건축물 위에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버섯재배사, 곤충사 등 농업관련 시설 건축물은 사용 승인일로부터 해당 용도를 주목적으로 3년이상 사용한 경우로 한정)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일조, 통풍, 조망 및 경관 등 주변 토지이용과 건축물의 안전 등을 고려하여 발전시설 설치를 허가한다.(단, 공작물의 수평투영 면적은 지붕면적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다)

⑤ (생략)

제21조(도로 등이 미 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2)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1. 도로와 대지와의 관계는 도시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읍지역은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이외의 지역은

④ -----

농축산업 관련 -----

⑤ (현행과 같음)

제21조(도로 등이 미 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

(2)에 따라 도로·상수도

않은 -----

않는

1. -----

진입도로의 너비가 일반도로 (폭 4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통상의 교통소통을 위하여 설치되는 도로)로 부터 4미터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개발규모가 5천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의 경우 진입도로 6m이상, 개발규모가 3만제곱미터 이상은 8m이상의 진입도로를 확보하여야 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단, 부지면적은 연접하여 개발하는 면적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가. ~ 다. (생략)

라. 창고, 축사, 작물재배사 (농·어·축산업) 용도의 건축물로서 신축또는 증설하고자 하는 부지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마. 광고탑, 철탑, 태양광발전 시설 등 교통유발효과가 없거나 미미한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단, 태양광발전시설은 개발규모가 2천제곱미터 미만의 경우 진입도로 2.5m이상, 개발규모가 2천제곱미터 이상은 3m이상의 진입도로를 확보하여야 한다.)

1의2. 신청지역에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이어지는 상

----- 일반도로
(폭 -----

-----로부터 -----
----- . 다만, 개발규모가 5천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이인 경우 진입도로 6미터 이상, 개발규모가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8미터 이상의 진입도로를 확보하여야 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단, 부지면적은 연접하여 개발하는 면적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

----- 신축 또는 -----

마. -----

미만이인 ----- 2.5
미터 이상-----
----- 이상인 경우 3미터
이상의 진입도로를 확보해야
한다---

1의2. -----

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 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상수도는 「수도법」에 따른 일반수도, 소규모급수시설, 전용상수도를 설치·이용하는 경우와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등을 확보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하수도는 「하수도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화시설 및 처리시설을 설치·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창고 등 상수도·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보존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안에서 농업·임업·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해당 지역 안에서 거주하는 기준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신축을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1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4. 위 1호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지역여건이나 사업특성을

설치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않는

3. 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고려하여 관계기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제22조(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군수는 영 별표 1의2 제2호 나목(2)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생 략)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석축·폐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하고 산지일 경우에는 「산지관리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생 략)
6.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메쌓기 또는

-----.

제22조(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

---(2)에 따라 -----

-----.

1. (현행과 같음)
2. ----- 않도록 옹벽·석축·폐붙임 -----

- 않도록 안전하게 -----
-----.
3. -----
-----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를 -----
----- 「산지관리법」 -----
-----.
4. -----

----- 않도록 -----
-----.
5. (현행과 같음)
6. -----
----- 메쌓기 -----

1.·2. (생략)

<신설>

제30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① 영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규칙 제9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예산내역서상의 기반시설의 설치,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조성 및 조경에 필요한 비용의 범위에서 산정하되 총공사비의 20%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안의 산림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산지관리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복구비용을 포함하여 정한다.

1.·2. (현행과 같음)

③ 영 제70조의14제3항제4호에 따른 경미한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에 따라 등록전환이나 분할에 따른 면적을 정할 때 발생하는 오차를 처리하기 위한 변경
2. 면적산정의 착오 등을 정정하기 위한 변경
3. 해당 성장관리계획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결정된 사항의 변경

제30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① 영 제59조제2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예산내역서상의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 및 조경에 필요한 비용의 범위 안에서 산정하되 총공사비의 20퍼센트 이내가 되도록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지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산지관리법」 제38조에 따른 복구비를 포함하여 정하되, 복구비가 이행보증금에 중복하여 계상되지

제31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1조 및 제78조제1항, 제79조(개발진흥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및 영 부칙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안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2.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 과 같다.
3. (생략)
4.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 과 같다.
5.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 과 같다.
6. ~ 22. (생략)
23. 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3과 같다.

<신 설>

제52조(개발진흥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9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

않도록 해야 한다.

제31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 영 제78조제1항에 따라 -----

--- 자연취락지구안에서의 ---

-----.

1. (현행과 같음)
2. -----
----- 별표 2 와 ---.
3. (현행과 같음)
4. -----
----- 별표 4 와 ---.
5. -----
----- 별표 5 와 ---.
6. ~ 22. (현행과 같음)

<삭 제>

24. 계획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 : 별표 24와 같다.

제52조(개발진흥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9조제3항에 따라 -----

축물 외에 해당 지구계획(해당 지구의 토지이용, 기반시설 설치 및 환경오염 방지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생략)

2. 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 또는 보전관리지역: 해당 용도 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가. (생략)

나. 해당 용도지역에 확장하여 설치되는 공장부지의 규모가 3천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만, 해당 용도지역 내에 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환경훼손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5천제곱미터 까지로 할 수 있다.

제58조(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4항의 규정 에 의하여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락지구 : 60퍼센트 이하

-----.

1. (현행과 같음)

2. 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 않는

가. (현행과 같음)

나. -----

----- 군계
획위원회-----

-----.

제58조(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

-----.

1. ----- 이하

(집단취락지구)에 대하여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개발진흥지구

가.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경우: 40퍼센트 이하

나. (생략)

3. ~ 6. (생략)

제58조의2(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 중 방화지구의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 중 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90퍼센트 이하로 한다.

2.·3. (생략)

4.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집단취락지구)에 대하여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

가. ----- 이하. 다만, 계획관리지역에 영 제31조제2항제8호나목에 따른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된 경우에는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나. (현행과 같음)

3. ~ 6. (현행과 같음)

제58조의2(건폐율 완화) -----

1. ----- 건축물 -----

2.·3. (현행과 같음)

4. ----- 군계획위원회 -----

를 거쳐 도로·상수도·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거나, 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기반시설 확보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5. 녹지지역·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의 이하로 한다.

가. (생략)

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등록문화유산

다. (생략)

6. 종전의 「도시계획법」(2000년 1월 28일 법률 제6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구역(이 조 제4항제6호에 따른 산업단지 또는 준산업단지와 연결한 것에 한정한다) 내의 공장으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

---- 인정되는 -----

5. -----

----- 30
퍼센트 -----.

가. (현행과 같음)

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및 국가등록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등

다. (현행과 같음)

6. -----

----- 영
제84조제4항제6호-----

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장의 건폐율은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7. 자연녹지지역의 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가. (생략)

나. 학교 설치 이후 개발행위 등으로 해당 학교의 기존 부지가 건축물, 그 밖의 시설로 둘러싸여 부지 확장을 통한 증축이 곤란한 경우로서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부지에서의 증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것

다. (생략)

<신설>

-----.

7. -----

-----.

가. (현행과 같음)

나. -----

----- 군계
획위원회-----

다. (현행과 같음)

8. 자연녹지지역의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가. 2021년 7월 13일 전에 준공되었을 것

나.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이하 “추가편입부지”라 한다)에 대해서만 건폐율 기준을 적용하고, 제2호의 경우에는 준공 당시의 부지(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의 부지를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준공당시부지”라 한다)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폐율 기준을 적용한다.

1. 추가편입부지에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생략)

나.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할 것

2. 준공당시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나. (생략)

다. 준공당시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합병할 것.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병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9조(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

1. -----

가. (현행과 같음)

나. -----
거쳐 기반시설이 충분히 설치되어 있거나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용지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고, -----

2. -----

가.·나. (현행과 같음)

다. -----

----- 않을 -----

제59조(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

2.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보관시설

3.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 (우리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한다)

<신 설>

제62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 (생 략)

② 삭 제

③ 영 제8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기숙사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다.

2.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

3.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 (고령군-----

제61조의4(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완화) 법 제75조의3 제2항에 따라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는 제57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폐율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 1. 계획관리지역: 50퍼센트 이하
- 2. 자연녹지지역·생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 및 농림지역: 30퍼센트 이하

제62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 (현행과 같음)

③ 영 제85조제3항에 따라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용적률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완화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용적률의 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임대 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의 추가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 이용하도록 해당 학교 부지 외에 건설하는 기숙사(「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를 말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까지 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가. ~ 마. (생략)

<신설>

<신설>

1.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임대 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영 제85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120퍼센트 이하

2. -----

「건축법 시행령」 -----

--- 기숙사(이하 이 항에서 “기숙사”라 한다)를 건설하는 경우: 영 제85조제1항 -----
----- 최대한도

가. ~ 마. (현행과 같음)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 이용하도록 해당 학교 부지에 기숙사를 건설하는 경우: 영 제8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

4. 「영유아보육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사업주가 같은 법 제10조제4호의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기 위하여 기존 건축물 외에 별도의 건축물을 건설

<신 설>

<신 설>

④ (생 략)

⑤ 법 제78조제6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2. (생 략)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서 정한 보건복지부 및 여성가족부가 정한 사회복지시설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법 제78조제6항 전단에 따라 그 대지의 일부에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

하는 경우: 영 제8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

5. 영 제85조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설하는 경우: 영 제8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부지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3항 전단에 따른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영 제85조제3항제6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영 제8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120퍼센트 이하

④ (현행과 같음)

⑤ -----

-----.

1. 2. (현행과 같음)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⑥ -----

여 기부하는 경우에는 기부하는 시설의 연면적의 2배 이하의 범위에서 추가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1. 제1항에 따라 도시·군계획 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의 120퍼센트

2.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

⑦ 법 제78조제6항 전단에 따라 기부 받은 사회복지시설을 제10항 각 호에 따른 시설 외의 시설로 용도변경하거나 그 주요 용도에 해당하는 부분을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없으며, 해당 시설의 면적이나 규모를 확장하여 설치장소를 변경(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경우에는 그 관할 구역 내에서의 설치장소 변경을 말한다)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시설의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다.

⑧ (생략)

<신설>

1.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120퍼센트

2. 영 제85조제1항 -----

<삭제>

⑧ (현행과 같음)

⑨ 법 제75조의3제3항에 따라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계획관리 지역에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125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제63조(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용적률) 영 제8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호의 지역 안에서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
2.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 100퍼센트 이하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라 목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 한다) : 150퍼센트 이하

제64조(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영 제8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은 경관·교통·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로 한다.

1. 공원·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수 있다.

제63조(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용적률) 영 제85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

--.

1. 도시지역외-----

2. ----- 따른 -----

3. -----
-----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

----- 한한다-----

제64조(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영 제85조제7항에 따라 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 -----

----- 제62조제1항 -----
-----.

1. -----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 공원·광장·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제65조(공지의 설치·조성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영 제85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지역·지구 또는 구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경우 당해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은 대지면적의 제공 비율에 따라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의 200퍼센트 이하로 한다.

1. (생략)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제65조의2(기존 건축물의 업종변경 특례 규정) 영 제93조제2항에 따라 기존의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제31조에 따른 건축제한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해당 건축물

 ----- 건축물이나 -----

2. -----

 ----- 1천제곱미터 -----

제65조(공지의 설치·조성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영 제85조제8항에 따라 다음 각 호-----

 ----- 경우에는 -----

 ----- 제공비율에 따라 제62조제1항 각 호-----
 -----.

1. (현행과 같음)
2. -----
 -- 따른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

제65조의2(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 ① 영 제93조제4항에 따라 기존의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영 제93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영 제71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부터 제84조까지, 제84조의2, 제85조부터 제89조까지 및 「수산

의 기존용도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기존 용도의 범위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도시계획조례의 제정, 개정
2.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변경 또는 행정구역의 변경

<신 설>

제65조의3(등록문화유산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등록문화유산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의 용도 지역별 건폐율과 용적율은 제57조 및 제62조에 따른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과 용적율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이 경우 건폐율은 9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자원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건축제한·건폐율 또는 용적률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건축물이 아닌 시설을 증설할 수 있다.

② 영 제93조제6항에 따라 기존의 건축물이 공장이나 제조업소인 경우에는 대기오염물질발생량 또는 폐수배출량이 증가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기존 용도 범위에서의 업종변경을 할 수 있다.

제65조의3(국가등록문화유산의 건폐율과 용적률에 관한 특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국가등록문화유산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의 건폐율과 용적률은 법 제77조부터 제79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용도지역 등에 적용되는 건폐율 및 용적률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66조(기능) 군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2.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
3. 군관리계획과 관련된 사항에 관한 군수에 대한 자문
4. 그 밖에 군계획과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

제72조(자료제출 및 제안설명 요청 등) ①·② (생략)

- ③ 위원장은 공동주택 건설 등을 위하여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을 심의하는 경우 민간사업자가 요청하는 때에는 그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 ④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변경하거나 민간사업자에게 부담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심의한 경우에는 해당 심의결과를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민간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3조(회의의 비공개 등) ① (생략)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의록은 군계획위원회 심의 중

제66조(기능) -----

-----.

1. (현행과 같음)
2.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되거나 재위임된 -----
3. 군수가 입안한 군계획안에 대한 자문
4. -----
---- 회의에 부치는 -----
--

제72조(자료제출 및 제안설명 요청 등) ①·② (현행과 같음)

- ③ -----

군관리계획안-----

-----.
- ④ -----
----- 군관리계획안-----

-----.

제73조(회의의 비공개 등) ① (현행과 같음)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113조의3제1항에 따라 회의록은

결 후 6개월 경과한 후 회의록의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1년간 열람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개에 의하여 부동산 투기 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생략)

제76조(설치 및 기능) ① ~ ③ (생략)

④ 단장 및 연구위원은 「지방공무원임용령」에 따라 10명 이내의 시간임기제공무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⑤ (생략)

제78조(임용 및 복무) ① 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 복무 등은 「지방공무원임용령」 및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생략)

제80조(설치 및 기능) ① 법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 단위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공동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공동위원회의 기능은 법 제30조 제3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및 자문한다.

심의 종결 6개월이 지난 후에는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공개하여야 한다. -----

1. -----
----- 해칠 -----

2. (현행과 같음)

제76조(설치 및 기능)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지방공무원 임용령」 -----

⑤ (현행과 같음)

제78조(임용 및 복무) ① -----
-----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

② (현행과 같음)

제80조(설치 및 기능) ① 법 제30조 제3항 및 제7항에 따라 -----

<삭제>

제82조(위원장의 직무, 회의 운영 등) 공동위원회의 위원장 등의 직무와 회의 운영, 간사 및 서기, 자료제출, 회의의 비공개, 회의록, 수당 및 여비지급 등에 대하여는 제68조 및 제69조, 제71조 부터 제7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2조(위원장의 직무, 회의 운영 등) -----
----- 운영 -----

----- 제68조부터 제69조의4
까지, 제71조부터 -----
-----.

관련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④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내용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인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21. 1. 12.>

1. 제1항에 따라 청취한 주민 의견을 도시·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2. 제30조제1항·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시·도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 심의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주민의 의견 청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1. 1. 12.>

제75조의3(성장관리계획의 수립 등) ②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는 제7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까지 건폐율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계획관리지역: 50퍼센트 이하
2. 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녹지지역: 30퍼센트 이하

③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계획관리지역에서는 제7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125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까지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① 법 제2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제25조제3항 각 호의 사항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 11. 13.>

②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조례로 주민의 의견 청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때 적용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11. 1., 2024. 1. 26.>

1. 도시·군관리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다음 각 목의 매체에 각각 공고할 것

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나 둘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을 말한다)

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매체

다. 법 제128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운영하는 국토이용정보체계

2. 도시·군관리계획안을 14일 이상의 기간 동안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

제43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③ 법 제51조제1항제8호의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이란 5천제곱미터 이상으로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유희토지 또는 대규모 시설의 이전부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신설 2012. 4. 10., 2018. 7. 17.>

1. 대규모 시설의 이전에 따라 도시기능의 재배치 및 정비가 필요한 지역
2. 토지의 활용 잠재력이 높고 지역거점 육성이 필요한 지역
3.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의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제50조의2(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법 제54조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23. 7. 18.>

1. 존치기간(연장된 존치기간을 포함한 총 존치기간을 말한다)이 3년의 범위에서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한 존치기간 이내인 가설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의 경우에는 각각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존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 목적으로 건축하는 가설건축물 또는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4호에 따른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가설건축물: 횡수별 3년의 범위에서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횡수만큼

나. 「건축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도시·군계획시설 및 도시·군계획시설예정지에서 건축하는 가설건축물: 도시·군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2. 재해복구기간 중 이용하는 재해복구용 가설건축물
3. 공사기간 중 이용하는 공사용 가설건축물

제57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① 법 제59조제1항에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다만, 도시·군계획사업(「택지개발촉진법」 등 다른 법률에서 도시·군계획사업을 의제하는 사업을 제외한다)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05. 9. 8., 2007. 4. 19., 2008. 1. 8., 2010. 4. 29., 2011. 3. 9., 2012. 1. 6., 2012. 4. 10., 2012. 10. 29., 2014. 3. 24., 2016. 5. 17., 2016. 6. 30., 2016. 8. 11., 2017. 12. 29., 2019. 8. 6., 2022. 1. 18., 2023. 3. 21.>

1의2.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그 면적이 제5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 미만인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법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방재지구 및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는 제외한다.

다. 해당 토지에 건축하려는 건축물 또는 설치하려는 공작물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용도·규모(대지의 규모를 포함한다)·층수 또는 주택호수 등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 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1,50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가목의 아동 관련 시설(1,50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의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서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

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같은 호 다목·라목의 시설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로서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0)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10(여러 차례에 걸쳐 증축하는 경우에는 누적하여 산정한다)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11) 1)부터 10)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진입도로(도로 연장이 5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84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⑥ 법 제77조제4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건폐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8. 9. 25., 2009. 7. 7., 2011. 7. 1., 2012. 4. 10., 2014. 1. 14., 2014. 10. 15., 2015. 7. 6., 2016. 2. 11., 2016. 5. 17., 2019. 8. 6., 2019. 12. 31., 2020. 5. 26., 2021. 7. 6.>

1. ~ 7. (생략)

8. 자연녹지지역의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 30퍼센트의 범위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가. 2021년 7월 13일 전에 준공되었을 것

나.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증축이 예정되어 있을 것

1) 기존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부지에 증축할 것

2)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증축 허가를 신청할 것

제85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용적률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완화할 수 있다. <개정 2018. 7. 17., 2022. 1. 28., 2023. 3. 21., 2024. 3. 19.>

1.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임대 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12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 이용하도록 해당 학교 부지 외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이하 이 항에서 “기숙사”라 한다)를 건설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범위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나.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다.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따른 한국사학진흥재단

라.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장학재단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 이용하도록 해당 학교 부지에 기숙사를 건설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범위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4. 「영유아보육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사업주가 같은 법 제10조제4호의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기 위하여 기존 건축물 외에 별도의 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범위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5. 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설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범위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부지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3항 전단에 따른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1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가. 질병관리청장이 효율적인 감염병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이하 “필요감염병관리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경우일 것

나. 필요감염병관리시설 외 시설의 면적은 제1항에 따라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에 해당하는 면적 이내일 것

제93조(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④ 기존의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제71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부터 제84조까지, 제84조의2, 제85조부터 제89조까지 및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건축제한·건폐율 또는 용적률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이 아닌 시설을 증설할 수 있다. <신설 2014. 10. 15.>

⑥ 제5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건축물이 공장이나 제조업소인 경우에는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기오염물질발생량 또는 폐수배출량이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존 용도 범위에서의 업종변경을 할 수 있다. <신설 2015. 7. 6.>

< 의안 소관 부서명 >

도 시 과	
연 락 처	054-950-6705